

적은 수가 구 소연방, 동구권역으로 5.5%였다. 이를 제외동포와 비제외동포로 나누었을 때, 제외동포가 25.3%였고 비제외동포가 74.4%였다.

○ 산재 발생했을 당시의 피해자의 연령에 대한 질문에서 20대는 35.5%, 30대가 43.4%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응답자의 78.9%가 2,30대였다.

○ 응답자의 본국에서의 학력에 대한 질문에서 가장 많은 비율인 39.5%가 고등학교 졸업이었다. 고등학교졸업 이상의 학력이 전체의 76.2%였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답도 1 사례가 있었다.

7. 조사대상자의 산재발생 관련 특성

○ 산재가 발생하였을 당시 응답자들의 한국어 구사능력에 대한 질문에서 한국말 구사에 어려움이 없는 정도가 33.9%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제외동포의 숫자가 많아서 나온 결과일 것이다. 대강이라도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32.5%였다. 한국어를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다는 사례도 14.1%였다.

8. 조사대상자의 취업현황

○ 산재사고를 당하였던 사업장의 소재지는 경기도지역 소재 사업장이 61%로 가장 많았다.

○ 산재가 발생했던 사업장을 업종별로 분류하였을 때, 금속·기계·장비업종이 가장 많아 29.2%였다. 두 번째가 건설업으로 20.4%, 세번째가 화학·섬유 96사례 20.2%, 네 번째가 가구·목재·종이 기타 제조업으로 16.6% 가장 적은 수가 음식료제조 및 음식업이 4.4%였다. 이 중 제외동포가 가장 많이 취업하였던 업종은 건설업이었다. 비제외동포의 경우 가장 많은 수가 금속·기계·장비업종에 취업하였다. 비제외동포의 두 번째로 많은 수가 화학·섬유였다. 합법체류자의 경우 사례수가 적기는 하지만 금속·기계·장비 업종에 가장 많이 취업하였고, 불법체류자의 경우 응답자의 가장 많은 수인 85.2%가 역시 금속·기계·장비업종에 취업하였다. 그러나 업종별 비율로 체류자격을 보았을 때, 건설업이 불법체류자의 비율이 96.7%로 가장 높았다.

○ 산재가 발생하였을 때 근무하였던 사업장의 규모에 대한 질문에서 평균 고용 노동자 수는 12명 \pm 1.9명이었다. 이 중 외국인노동자의 평균수는 6.5명 \pm 10명이었다. 즉 평균적으로 한 사업장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수는 전체 고용노동자수의 50%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가장 많은 비율이 5인~29인 사업장으로 전체의 74.7%였다.

9. 조사대상자의 근로조건

○ 1일 근로시간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33.3%가 1일 12시간 근로였다. 13시간 이상이 8.8%, 18시간 이상 근로도 2명이나 응답하였다. 이를 좀더 단순화시켜보았을 때, 1일 근로시간이 10~12시간인 경우가 71.0%로 절대다수였다. 1일 근로시간은 중국 - 동남아시아 권역 - 구 소연방 및 동구권역 - 중동 및 기타 권역의 순으로 길었다. 산재발생시 합법체류자가 불법체류자보다 1일 근로시간이 더 길었다.

○ 월급여에 대한 질문에서 가장 많은 비율이 100만원~149만원이었는데, 이는 주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제외동포의 수가 많은 탓인 듯하다. 월급여 49만원 이하도 2.4%가 있었고, 50만원~60만원미만이 16%, 60만원~69만원이 10%, 70만원~79만원사이가 21.8%, 80~89만원이 19.9%, 100만원~149만원이 23.8%, 150만원 이상도 6.0%였다. 36.8%의 응답자가 월 80만원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중국국적의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월급여가 타 국적보다 훨씬 높았고, 중국 - 동남아시아 - 구소연방 및 동구 - 중동 및 기타 의 순으로 월급여가 적었다. 월급여는 제외동포인 경우가 비제외동포인 경우보다 훨씬 높았다. 그리고 여성의 월급여가 남성보다 훨씬 적었다. 산재발생시 불법체류자였던 경우가 합법체류자였던 경우보다 월급여가 훨씬 높았다.

○ 1달의 평균휴일회수에 대한 질문에서 가장 많은 수가 한달에 4회 쉰다고 답했다. 그러나 1달에 1회 쉰다고 답한 경우가 9명, 휴일이 아예 없었다고 답한 경우도 6명이나 되었다.

○ 산재를 당한 사업장에 입사하게 된 경로는 가장 많은 수가 같은 나라 친구의 소개였다.

IV. 조사에서 나타난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재발생의 문제점

1. 산재발생과 관련하여 드러난 문제점

1) 안전교육의 부족

많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산재피해를 당하고 있다. 한 달 이내의 취업기간 중에 산재가 발생하는 것은 부지기수이며 취업한지 1주일 이내, 심지어는 작업시작 1-2시간만에 산재를 당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어와 한국물정에 서툰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채 작업에 투입하기 때문으로 보아야 한다. 실태조사에서도 안전교육을 대충이라도 받았던 경우 입사 후 산재를 당하는 기간이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던 경우보다 늦춰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2) 한국어 미숙이 산재 유발을 촉진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실태조사에 의하면 많은 한국어를 어느 정도 잘 구사할 수 있으나에 따라 입사 후 산재를 당하는 기간이 차이가 있었다. 한국어를 잘 구사할수록 입사 후 산재가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이 길었다. 당연한 말이지만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어야 안전수칙이라도 제대로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

3) 장시간노동/휴일의 문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가장 많은 수가 1일 평균 10-12시간씩 근로하고 있다. 그 이상의 근로시간도 적지 않아 심지어는 하루에 18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도 있었다. 거기에 연장근로, 휴일특근 등도 잦으며, 특히 야간작업의 경우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거의 도맡아 하고 있는 것이 이들의 실정이다. 장시간노동에 따른 피로는 산재발생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어떤 경우는 36시간을 연속하여 노동한 적도 있다. 이 사람은 36시간 연속근로 후 산재를 당했다. 1일 근로시간이 길수록, 그리고 한 달의 휴일회수가 적을수록 입사 후 산재가 발생하는 기간이 짧았다.

4) 안전장치 혹은 안전장비 미비

한국인 노동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주로 취업하는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체들의 경우 노후한 기계를 교체하지 않거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고의로 기계의 안전장치를 가동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대개의 신체절단, 압착 등의 사고는 안전장치 미비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영세중소기업체의 작업환경의 위험도는 심

각하다고 하겠다.

2. 치료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1) 치료비도 자비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업주들이 미등록노동자가 산재를 당했을 때 산재보험처리에 미온적이며, 그렇다고 사업주가 치료비와 휴업급여, 장해보상금 등을 지불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대개의 사업주들이 치료해주었으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나마도 나온 편인데 치료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개는 일부 금액을 공제하고 있는데, 때로는 치료비 전액을 공제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혹은 입원치료비는 사업주가 부담하지만 통원치료비나 물리치료비는 지불하지 않아 자비로 부담하는 사례도 많았다. 이런 경우일수록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산재를 당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산재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금전적인 손실에, 치료를 위해 부담해야 하는 금전적인 손실의 2중의 고통을 겪게 된다.

2)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산재를 당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개의 경우 통원치료 과정에서 이런 현상들이 발견되는데 때로는 입원치료 과정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사업주들이 치료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필요한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일어난다. 혹은 산재요양신청을 하지 않은 대신 계속 채용할 것을 약속하면서, 통원치료기간 동안 작업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많이 일어난다.

3) 치료기간 중의 금전적인 문제

산재치료를 받는 과정에 있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가장 괴롭히는 문제는 치료비 및 줄어드는 생활비문제이다. 산재보상보험법이 적용되어 치료비며 휴업급여가 지급된다 고 하더라도 적은 휴업급여로는 생활하기가 어려운 것이 실정이다.

4) 앞날에 대한 불안함

산재치료를 받는 과정에 있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괴롭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불투명한 앞날에 대한 불안함이다. 그 중에는 불법체류자 신분인지라 산재보상보험법의 절차를 밟는 과정 중에, 혹은 모든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고국으로 추방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컸었다. 거기에 장애가 남을지, 치료 종결 후 재취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함도 컸었다.

3. 재취업, 재활과 관련하여 드러난 문제점

1) 한국에서 재취업할 때의 애로사항

많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산재치료가 종결된 이후, 중장해가 아니라면 한국에서 재취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산재로 인해 재취업은 쉽지 않았다. 많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산재를 당했던 사업장에서 자의보다는 사업주의 해고, 부도 등의 이유로 다른 사업장을 찾아야 했다.

2) 귀국후의 재취업에 대한 불확실성

귀국 후의 재취업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장해가 남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67%가 귀국 후에 취업할 수 없거나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본국을 떠나 타국으로 이주하여 노동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면에는 본국의 높은 실업률, 저임금 등의 경제적 이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성한 신체로도 취업이 쉽지 않은 터에 훼손을 당한 경우 취업이 더욱 쉽지 않을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나마 본국의 집안의 경제사정이 괜찮거나 한국에서 웬만큼 돈을 번 경우라면 자영업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생계에 대한 대책도 막연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외국인 이주노동자들로 하여금 귀국을 망설이게 하고, 일할 수 있는 정도의 장해라면 한국에 계속 머물거나 또 다른 나라를 찾아 이주하게 만들고 있다.

3) 직업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아.

실태조사에 응한 응답자의 72%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들 중 67.4%는 한국의 컴퓨터 관련 직업교육을 받고 싶어했다. 장해가 남아 본국에서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 중장해가 아니라면 컴퓨터를 배울 경우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직은 외국인 이주노동자에게는 합법체류자이건, 불법체류자이건 상관없이 직업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V. 상담을 통해 본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재실태

이상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산재피해의 양상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편, 실태조사과정에서 문항화하여 질문하지는 않았지만 일선에서 상담을 진행하면서 파악되는 생생한 현실 경험 역시 이들의 산재실태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하에서는 실태조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일선 현장에서 산재피해자들의 상담을 진행하면서 드러나는 문제점들 중 실태조사보고와 겹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서술하기로 한다.

1. 체불임금과 겹치는 사례가 많다.

산재를 당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많은 수가 체불임금사태와 겹치고 있다. 체불임금은 산재를 당하기 전부터 발생한 경우도 있지만, 산재를 당하고 나서 치료기간중의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인권모임의 대상 사례 107건 중 체불임금과 겹친 사례는 모두 34건으로 1/3의 수준이었다. 산재를 당한 것도 힘겨운 상황인데 거기에 체불임금까지 겹친 경우 당사자에게는 최악의 상황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례에서 사업주들이 가장 많이 보이는 반응이 치료비가 많이 들어 임금을 주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다. 이로 인해 산재를 당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산재로 돈을 벌지 못함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 산재치료에 필요한 비용부담에 따른 고통을 겪고 있었다. 많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산재치료가 끝나고 모든 보상절차가 끝날 때까지 친구들에게 빚을 지면서 살아가고 있고, 이런 요인들이 시간이 걸리는 산재보험절차를 밟기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사업주와의 합의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

2. 산재절차에서 사업주와의 충돌이 고통을 더욱 가중시킨다.

산재를 당한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산재보상보험법상의 절차를 거치는 동안 사업주와 직접 접촉해야 하는 경우가 요양신청서작성 때와 장해보상청구서작성 때를 포함하여 적어도 두 번은 있게 된다. 거기에 체불임금까지 결들여있다면 수 차례 사업주와 마주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산재피해를 입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주와 충돌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해 사업주에 대한 배신감과 고통이 깊어진다.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상담지원단체를 찾아간 사실을 곱게 보지 않으며, 때로는 협조해줄 듯이 하면서 사실상 골탕먹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3.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산재에 대한 고용사업주들의 반응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산재사고를 당하면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안타깝게도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산재처리에 협조하는 사업주는 그리 많지 않다. 때로는 단지 거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승인요청을 할 경우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해버리겠다고 협박하는 사업주조차 있다. 이하에서는 사업주들이 많이 보이는 반응을 서술하기로 한다.

1) 치료만 해주었으면 되었지 뭘 더 바라느냐.

산재를 당한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위해 사업주와 접촉하는 상담원이 가장 자주 접하는 반응이 '치료 해주었으면 되었지 뭘 더 바라느냐' '산재처리를 하면 내가 손해가 너무 크다'는 두 가지 반응이다.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하면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이후 몇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다. 산재보험요율이 올라가고 산재보험료가 올라가며, 거기에 초과체류중인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경우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초과체류자 고용에 따른 벌금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거기에 산재를 은폐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환자에게 지불한 금액의 50%를 사업주에게 지불토록 하는 등의 조치가 뒤따르며,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주로 취업하는 소규모영세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런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데 대한 과태료까지 물어야 한다.

이런 몇 가지 점들 때문에 대개의 사업주들은 산재처리에 호의적이지 않다. 때문에 많은 경우 상담원들은 사업주의 확인도장이 누락되어 있는 채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산재승인을 요청하기 마련이다.

2) 협조해주되 강제출국시키겠다.

산재를 입은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적법한 산재승인 절차를 밟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를 입은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이름을 출입국관리소로 보내야 하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이로 인해 때로 외국인 이주노동자 스스로가 산재승인 요청을 철회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 경우 주로 사업주와 합의를 하게 되는데, 최소한 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수준의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미 산재보상보험 승인절차를 포기하기로 마음먹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가능하면 합의금을 적게 지급하고자 하는 사업주와의 협상에서 이미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어버린 것이다.

때로는 사업주가 산재 승인에 협조는 해주되 반드시 강제출국시키겠다고 하기도 한다. 그리고 실제로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해버리기도 한다. 이런 사업주는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상담지원단체와 접촉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불쾌해하고, 기계에 부착되어 있는 안전장치를 일부러 작동되지 않도록 조치해놓아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일말의 미안함도

가지지 않는다.

3) 치료소홀 혹은 치료 거부사태가 적지 않다.

산재를 당한 노동자에게 적절한 치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단 신체를 훼손 당한 노동자가 치료를 완벽하게 받고자 하는 마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모든 물정에 서툰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경우, 사업주가 치료비가 많이 드니 퇴원하라고 종용하거나, 병원비가 싼 병원으로 옮길 것을 종용해도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때때로 병원측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함을 주장해도 사업주의 강요로 응급처치만 받거나 혹은 통원치료만 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로 인해 부상부위가 악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4) 계속채용을 조건으로 산재처리 거부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그리 중하지 않은 산재를 입어서 치료종결 후 계속 작업이 가능할 경우, 사업주들은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통원치료중임에도 일할 것을 요구한다. 물론 장해가 남더라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신체가 훼손된 상태에서 다른 직장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 때문에 사업주의 요구에 응하여 치료 중에도 작업을 계속하게 된다. 그러면서 작업에 쫓겨 치료에 소홀해지기 일쑤이다. 어떤 사업주는 통원치료를 하러 가려고 하면 욕설을 퍼부어 병원을 가기 어렵게 만들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런 사업주일수록 상담지원단체가 접촉하였을 때, 딴 데서 일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계속 데리고 있어주었다는 식의 반응을 보인다.

5) 산재피해자에 대한 해고

심한 산재를 당한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경우 사업주들은 망설임없이 해고한다. 드물게 약간의 위로금을 쥐여주고 내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잔존장해에 대한 보상을 일체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시키는 경우도 많다. 기숙사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던 외국인 이주노동자라면 치료비는 고사하고 당장 숙식을 해결할 길도 없어 친구집을 전전하면서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6) 사실왜곡

앞서 서술한 대로 초과체류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였다가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 불이익을 겪게 된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업주들은 상담단체에서 산재절차에 협조를 부탁하면 사실을 왜곡하기를 서슴지 않는다. 사실왜곡은 대개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첫째, 채용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이다.

'그런 사람 채용한 적 없다'가 주로 보이는 반응이다. '나는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한 적이 없다' 혹은 '외국인 노동자를 계속 썼지만 그런 사람은 없었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는 데,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에 대해 심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다. 이런 경우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나 한국인 노동자가 있다면 다행이긴 하지만 이를 증언하기 위해 증언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둘째, 사고경위를 왜곡하는 경우이다.

산재사고 발생의 경위를 왜곡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고경위를 왜곡하는 과정은 신기하게도 비슷하다, 가장 많이 나오는 반응이 '일부러 그랬다'이다. 그리고 그 이유로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라고 한다.

셋째, 임금 등 관련사항을 왜곡하는 경우이다.

산재적용을 받는데 있어 사업주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어 진정서와 같은 방식으로 산재승인절차를 밟을 경우, 거의 대다수의 사업주들이 임금액을 왜곡하였다. 70만원의 월 임금을 50만원으로, 분명 지급하였음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일체 누락한 채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경우 등으로, 이로 인해 가뜩이나 70%밖에 받지 못하는 휴업급여 액수가 낮아지고, 장해보상금까지 제대로 받지 못하기도 한다. 장해보상금의 경우 산재보상보험법에 규정된 대로 최저평균임금의 적용을 받는다면 별문제가 없지만, 평균임금이 최저기준보다 더 높을 경우에는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다. 대개의 사업주들이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채용하면서 임금대장과 같은 서류를 제대로 갖춰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 논란이 되었을 때 대개의 경우 사업주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7) 장해보상금도 협상하자.

산재보상보험법을 적용하기를 거부하는 사업주일수록 치료과정중의 휴업급여, 장해보상금에 대해서 협상을 요구한다. 산재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사업주측의 편의와 이익(과태료 회피 등을 위한)을 위해서인데, 그렇다면 적어도 산재보상보험법상 정당하게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지불하는 것은 기본일 것이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사업주들이 협상을 통해 지급금액을 줄이려고 하고, 보상금을 깎아주려(?) 하지 않는 상담지원단체를 몰정 모르는 사람들인 양 취급하려고 한다.

8) 언어가 서툰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배려 부족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많은 수가 한국어에 서툰 상태에서 산재를 당하게 된다. 한국 물질과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받는 경우도 많지 않다. 이는 산재승인

이 난 외국인 이주노동자나 그렇지 못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이는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회사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 나아가 한국인 전반에 대하여 신뢰가 없을 때 피해자는 매우 불안한 상태에 처하게 된다. 특히 절단사고를 당한 경우,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사업주가 병원비를 아끼기 위해 봉합할 수 있었음에도 절단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 병원측에서 좀더 치료가 필요하고 입원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고 함에도 강제로 퇴원시키는 상황을 겪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이런 의구심을 더욱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경우일수록 상담지원단체에서 회사와 접촉하였을 때, 회사에서는 상담지원단체를 찾아간 사실 자체에 대해 불쾌해한다. 때로는 그로 인해 산재 피해자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기까지 한다.

4. 회사부도와 산재

산재피해를 입었는데 회사가 부도났을 경우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어떤 대책도 세울 수 없는 처지가 된다. 한국어도 하지 못하고,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산재를 증명해줄 한국인이나 외국인동료도 마땅하게 찾지 못할 경우 산재사고 발생에 대해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5. 직업성 재해에 대하여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사고성 재해에 대해서는 전체 통계가 잡히지 않더라도 상당수가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직업성 재해에 대해서는 아직 그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국인 노동자들과 다른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취업양태가 가장 큰 이유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일선의 상담지원단체들에서는 조금씩이긴 하지만 직업성질환자의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이들이 장시간 노동에, 대부분 단순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직업성 질환자가 매우 많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아직 전체적인 윤곽은 알 수 없다.

1) 직업성 재해 발병사례 나타나기 시작

인권모임에 접수된 산재사례 중 2001년에 2명의 직업성 요통환자(중량물을 들다가 허리를 다침), 2002년에 3명의 직업성 요통환자(중량물을 들다가 허리를 다침), 1명의 정맥류환자(서서 일하는 직종에 근무), 1명의 직업성 두통환자(화학약품을 다루는 공장에 근무), 3명의 직업성 유기용제중독자(화학약품을 다루는 공장에 근무)의 사례가 접수되었다. 그러나 이들 중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는 한 사람뿐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직업성질환의 발병경로가 밝혀지지 않았거나, 직업성질환임은 분명하나 증명이 어려웠거나, 알면서도 본

인이 포기하였거나, 귀국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경우, 직업성질환임은 분명하나 좀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데 본인들이 검사비용의 문제로 포기한 사례이다.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람의 경우도 회사가 부도난 상태에서 발병의 경위를 증명하기가 어려워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이처럼, 한국에 오래 체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점차 직업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

2) 직업병이 발견되기 어려운 이유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직업성 재해가 발견되기 어려운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잦은 사업장 이동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은 유난히 잦다. 한국에 오래 거주하여 물정을 잘 아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취업하기 전에 여러 조건들을 알아보고 취업하기 때문에 이동이 상대적으로 덜 하지만, 한국의 물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장으로 옮기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직업병으로 추측되는 질환이 발병해도 그 경로를 추적하기가 쉽지 않고 증명은 더더욱 어렵다.

* 이들에 대한 의로서비스의 미흡으로 조기발견이 어렵다

한국에서 취업하면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본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얼마나 될까. 산업연수제로 입국한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기도 하지만 미등록노동자의 경우 평소에 직업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는 아직껏 본 적이 없다. 거기에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터라 웬만한 질병이 아니라면 병원비 부담으로 인해 병원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이로 인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이 직업병의 조기발견이 어려운 점이다. 미등록노동자들의 의로서비스를 위한 기관인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의 자료에 따르면 병원을 찾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질환이 요통이었다. 이는 직업병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긴 하지만 그 진상을 알기는 어렵다. 물론 그 외에도 유해위험작업장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수가 적지 않은데 이들 역시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

* 노사간의 직업병에 대한 인식부족

한국인 노동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지만, 노동자는 물론 사업주도 직업병에 대한 인식수준은 매우 낮다. 예컨대 중량물을 들다가 허리부상을 입는 직업성 요통환자의 경우 사업주는 물론이지만 노동자 자신도 이것을 산재로 인식하는 경우가 낮다. 작업 중에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노동자들은 잠시 휴식을 취한다든지, 병원에 가서 진통제나 한의원에

가서 침을 받는 등의 조치만을 취하고 있었다.

인권모임에서는 의료공제회의 회원으로서 병원을 소개받으러 오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게 질환과 직업과의 연관성을 반드시 문의하는데, 직업성 질환의 의심이 가는 경우에 직업병에 대한 인식이 깊은 병원을 소개한다든지, 정밀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유하는 경우에도 정작 당사자들이 이를 실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당장 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재해가 아닌데, 직업병 검사를 위해서 회사를 쉬어야 한다든지, 검사비용이 든다든지 하여 금전적으로 손실을 입어야 하는 점이 이들이 직업병 검진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다. 그러다가 병이 깊어진 뒤에야 상담지원단체를 찾아와 직업병 검사절차를 밟고 요양신청 절차를 밟고자 하나 그 기간이 오래 걸리고, 신체의 통증은 심하고 하여 포기하고 본국으로 귀국하고 마는 사례들도 있는 것이다.

VI. 개선방안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산재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이를 예방의 측면과 보상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1. 예방의 측면

(1) 사업장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해야

산재발생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사업장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안전장치를 작동하지 않는 사업장, 기계의 점검을 소홀히 하여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 동일한 산재가 연거푸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후적일 뿐만 아니라 사전적으로도 정기적이고 엄격한 관리감독이 시행되어야 한다.

(2) 안전교육/언어교육 필수적으로 되어야

언어가 서툰다는 것은 모든 물정에 서툰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작업에 투입되기 전에 언어교육은 필수적으로 되어야 한다. 안전교육 역시 마찬가지이다. 특히 언어가 서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전교육은 한국인에 대해서보다 더 철저히 되어야 한다.

(3) 산업의학적 관점에서 정기적 건강진단필요

합법체류자이든 초과체류자이든 상관없이 노동자에 대한 건강검진은 정기적으로 되어야 한다. 건강검진은 산업의학적 관점에서 충실히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써 직업성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작업중지권 인정되도록 해야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한국의 물정에 어두운 한편, 한국내에서의 체류자격과 관련하여 합법체류자이든 불법체류자이든 상급자의 지시를 거절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 정상적인 업무지시일 경우 당연히 따라야하겠지만, 자신의 신체에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예컨대 기계가 평소와 다른 반응을 보인다든지, 자신이 한번도 해보지 않은 위험한 기계를 작동시켜야 하는 경우 당사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작업지시를 거부할 경우 뒤따를 해고의 우려 때문에 상급자의 지시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기계의 이상을 상급자에게 보고하였음에도 괜찮으니 작업하라는 지시를 받았거나, 한번도 해보지 않았기에 하지 않겠다고 하였지만 상급자의 지시를 계속 거

부하기 어려워 작업하다가 산재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5) 한국의 모든 외국인 이주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노동법 전면 적용필요

현재 해외투자법인 연수제나 산업연수제에 의해 한국에서 취업하고 있는 산업연수생들이나 미등록노동자들의 경우, 관련 법이나 지침상으로는 산재보상보험법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많은 사업장에서 산재보상보험을 요청하기 보다는 공상 혹은 자비를 들여 치료하게 하고 있다. 전반적인 여건에서 산업연수생이나 미등록노동자보다 더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해외투자법인 연수생의 경우는 실상도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거나 아 몇몇 알려진 사례를 통해 보더라도 참담한 지경이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한국에서 취업중인 모든 외국인 이주노동자에게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실질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6) 직업병 증상을 보이거나 직업병의 의심이 가는 경우 배려가 필요하다.

직업병의 초기증상을 포함하여 직업병증상을 보이거나 직업병이 의심되는 상태에 있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배려가 필요하다. 직업병의 의심이 있더라도 직업병임이 판정되기 전에 거쳐야 할 각종 검사비용은 이들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다. 이로 인해 분명 직업성 질환임에도 정밀검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결국 조기에 치료할 수 있거나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결과가 된다. 때문에 의학적 판단으로 직업성 질환이 분명해 보이는 경우 이들의 금전적인 부담을 경감해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7) 미등록노동자들을 전면 사면해야 한다.

많은 미등록노동자들이 산재피해를 입어도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의 문제로 인해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사업주들이 악용하는 것은 물론이다. 사업주들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게 산재보상보험을 요청한다면 '너는 출국당해야 한다'는 말로 사실상 위협을 가하고 있고, 그렇다고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도 아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등록노동자들을 전면 사면해야 한다. 그러므로써 산재피해를 입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유의사로 사업주와 합의할 수 있고, 은폐된 산재사고 뒤에서 한국인에 대한 증오심을 불태우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

2. 보상의 측면

(1) 산재승인에 대해 협조하는 사업주에게는 벌금면제 혹은 대폭 감면해주어야

미등록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채용한 데 대한 벌칙으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은

산재은폐를 촉진한다. 미등록노동자를 채용하였다 하더라도 산재가 발생한 후 산재승인에 협조하는 사업주에게는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을 면제한다든지 적어도 대폭 감면해주는 정도의 유연한 조치가 필요하다.

(2) 휴업급여 70%는 너무 적다.

산재를 당한 한국인 노동자의 경우에도 휴업급여 70%는 생활하기에 너무 적은 금액이다. 산재를 당해 치료중인 노동자는 치료를 위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휴업급여 70%는 사실상 이중으로 임금이 깎이는 것과 같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한국인보다 임금이 낮기 때문에 휴업급여 70%로는 생활하기가 힘들어진다. 예컨대 월 80만원의 임금을 받던 외국인 이주노동자라면 월 56만원의 휴업급여로 한 달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거기에 한국이 생활근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인노동자의 경우보다 생활하기가 훨씬 힘이 든다. 이로 인해 산재피해를 입은 많은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친구들의 집을 전전하고 친구들에게서 빚을 내어 생활한다. 산재를 입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치료기간 중에 가장 근심하는 것이 줄어드는 임금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휴업급여도 장애보상금처럼 최저기준을 설정해두고 70%의 휴업급여가 최저기준에 미달할 경우 최저기준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3) 피해자의 주장을 일차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업주가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월급여 등의 서류를 갖춰놓고 있지 않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다수가 근무하는 30인 미만의 영세중소기업은 물론이고 이보다 큰 규모의 기업의 경우에도 세금이나, 불법체류자 채용에 따른 과태료의 우려 때문에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다. 월급을 지급할 때에도 금액과 내역이 기재된 월급봉투에 받기보다는 아무것도 씌여 있지 않은 봉투, 혹은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산재가 발생하여 휴업급여나 장애보상금을 청구할 때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월임금을 깎아 진술하는 경우에도 산재피해를 입은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자신의 월급여액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그야말로 눈뜨고 월급여가 깎이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때문에 산재가 발생하였는데, 월급여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사업주가 갖추지 못한 경우 피해자의 주장을 일차적으로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

(4) 재수술을 해야 하는 환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재수술을 받아야 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한국에 계속 거주하기 어렵다. 직장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본국으로 돌아가기도 어렵다. 재수술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귀국하고 싶어도 귀국하지 못한 채 초과체류 상태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 인권모임을 통해 산재승인을 받고 재수술을 기다리던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본국으로 귀국했다. 그는 무려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재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한국에 초과체류하면서 기다릴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귀국준비를 하면서 내내 재수술을 위해 다시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염려했다. 때문에 재수술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본인이 귀국을 원할 경우 재입국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한국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적어도 재수술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6) 간병에 관하여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본인이 원한다면 치료기간 동안 간병을 위해 본국의 가족이 체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7) 장애등급 판정자에 대한 직업교육 실시하여야

근로복지공단에서 벌이고 있는 산재 피해자의 재활을 위한 직업교육은 현재 한국인 노동자에게만 열려 있다. 산재피해를 입은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측에서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 규정을 살펴보아도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배제한다'는 규정은 없다. 산재를 당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한국인 노동자와 차별해야 할 어떤 합당한 근거도 없다. 이는 명백히 국적에 의한 차별인 것이며, 산재를 당한 이상 내국인이든 외국인인든 무관하게 직업교육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산재를 당해 장애가 남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귀국했을 때, 자영업이든, 재취업이든 생활방도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8) 일정 비율 이상으로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 본인이 원한다면 영주권을 주고 자활할 수 있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본국에서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외국으로 이주하여 노동하였던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부상당한 신체로 본국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특히 중장해를 입은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경우 귀국한다 해도 생계가 막연할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직업성재해이든 사고성 재해이든 산재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사업장이 안전한 노동을 하기에 부적합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안전한 노동을 위해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의 직무소홀을 의미한다. 한국정부는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때문에 산재로 중장해를 입은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경우, 본인이 원한다면 한국에서 자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한국정부가 이들에게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의무일 것이다.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피해 실태 조사

외국인 이주노동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희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은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상담 지원단체입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취업중에 산재를 당한 외국인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 조사는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무기명통계로 처리되기 때문에 응답자의 개인적인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산재사고로 인해 여러 가지 고통과 애로사항이 많음에도 저희들의 조사를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2년 3월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TEL (02) 749-8975 주 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1가 303-2 한성빌딩 401호

Foreign Migrant Workers' Industrial Accidents Survey

March 5, 2002

Dear foreign friends,

Hello! The Association for Foreign Workers' Human Rights (AFWHR) is one of migrant supporting NGOs in Korea. We are now conducting a survey research for the industrial accidents of migrant workers. (The English questionnaire begins at page 11.) The information gained in this study will be used to make specific policy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experience of foreign workers in Korea. AFWHR would greatly appreciate a few minutes of your time. The information you provide will be kept strictly confidential. For your assurance, all respondents will remain anonymous. Your participation is really appreciated.

The Association for Foreign Workers' Human Rights

TEL (02) 749-8975 Hansung B/D #401, Hangangro 1ga 303-2, Yongsan gu, Seoul, Korea

먼저, 귀하의 인적 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 귀하의 국적은 무엇입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방글라데시 | <input type="checkbox"/> ② 중국 |
| <input type="checkbox"/> ③ 인도 | <input type="checkbox"/> ④ 인도네시아 |
| <input type="checkbox"/> ⑤ 이란 | <input type="checkbox"/> ⑥ 가나 |
| <input type="checkbox"/> ⑦ 카자흐스탄 | <input type="checkbox"/> ⑧ 몽골 |
| <input type="checkbox"/> ⑨ 미얀마 | <input type="checkbox"/> ⑩ 네팔 |
| <input type="checkbox"/> ⑪ 나이지리아 | <input type="checkbox"/> ⑫ 파키스탄 |
| <input type="checkbox"/> ⑬ 필리핀 | <input type="checkbox"/> ⑭ 러시아 |
| <input type="checkbox"/> ⑮ 스리랑카 | <input type="checkbox"/> ⑯ 타이 |
| <input type="checkbox"/> ⑰ 우즈베키스탄 | <input type="checkbox"/> ⑱ 베트남 |
| <input type="checkbox"/> ⑲ 기타(무엇? _____) | |

2. 귀하는 재외동포입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예, 재외동포다 |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
|-------------------------------------|--------------------------------|

3.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남자 | <input type="checkbox"/> ② 여자 |
|-------------------------------|-------------------------------|

4. 귀하는 언제 태어났습니까?

19 년

5. 귀하는 언제 한국에 입국하였습니까?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한 경우는 가장 최근에 입국한 연도를 적어 주십시오.)

년 월

6. 귀하는 한국에 들어올 때 어떤 비자를 발급 받았습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해외투자 관련 산업연수(D-3-1) | <input type="checkbox"/> ② 업종단체추천산업연수(D-3-2부터 D-3-6까지) |
| <input type="checkbox"/> ③ 단기종합(C-3) | <input type="checkbox"/> ④ 단기상용(C-2) |
| <input type="checkbox"/> ⑤ 사증면제(B-1) | <input type="checkbox"/> ⑥ 관광통과(B-2) |
| <input type="checkbox"/> ⑦ 방문동거(F-1) | <input type="checkbox"/> ⑧ 기타 비자(무엇? _____) |
| <input type="checkbox"/> ⑨ 밀입국 | |

18. 귀하가 일하며 산업재해 사고를 당했던 회사의 업종은 무엇입니까?

- ① 음식료품제조업
- ② 담배제조업
- ③ 섬유제품
- ④ 의복 및 모피제품
- ⑤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
- ⑥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제외)
- ⑦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 ⑧ 인쇄(출판 및 기록매체 복제업제외)
- ⑨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 ⑩ 화합물 및 화학제품
- ⑪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 ⑫ 비금속 광물제품
- ⑬ 제1차 금속
- ⑭ 조립금속제품(기계 및 장비제외)
- ⑮ 기계 및 장비
- ⑯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 ⑰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 ⑱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 ⑲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 ⑳ 자동차 및 트레일러
- ㉑ 기타 운송장비
- ㉒ 가구 및 기타 제조업
- ㉓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 ㉔ 건설업
- ㉕ 음식업
- ㉖ 기타(무엇? _____)

19. 귀하는 그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20. 귀하는 어떻게 그 공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 ① 산업연수생으로 배치받았다
- ② 같은 나라 출신 친구의 소개
- ③ 한국인 친구의 소개
- ④ 직업소개하는 외국인의 소개
- ⑤ 직업소개하는 한국인의 소개
- ⑥ 광고를 보고 내가 직접 찾아갔다
- ⑦ 기타(_____)

21. 귀하가 그 공장에서 일을 할 때 직원이 모두 몇 사람이었습니까?

(1) 한국인노동자 명 (2) 외국인노동자 명

22. 귀하는 그 공장에서 하루에 몇 시간 일했습니까? (평일 기준)

- ① 8시간
- ② 9시간
- ③ 10시간
- ④ 11시간
- ⑤ 12시간
- ⑥ 13~15시간
- ⑦ 16~18시간
- ⑧ 18시간 이상

23. 귀하는 그 공장에서 한 달에 평균 며칠 쉬었습니까?

- ① 1번
- ② 2번
- ③ 3번
- ④ 4번
- ⑤ 5번 이상

24. 귀하가 산재사고를 당한 것은 언제입니까?

년 월

25. 사고가 난 시간은 몇 시 무렵이었습니까?

시 무렵 (오후에 사고가 났으면 12시를 더한 값을 적어주십시오)

26. 귀하는 작업하기 전에 귀하가 해야 할 일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까?

- ① 잘 알고 있었다
- ② 대강은 알고 있었다
- ③ 거의 모르고 있었다
- ④ 전혀 몰랐다

27. 작업하기 전에 귀하의 작업내용에 대해 누가 가르쳐주었습니까?

- ① 사장
- ② 공장장
- ③ 반장·주임
- ④ 동료 노동자
- ⑤ 기타(누구? _____)

28. 귀하는 작업을 시작할 때 안전교육을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 ① 충분히 안전교육을 받았다
- ② 대충 안전교육을 받았다
- ③ 안전교육을 전혀 못 받았다

29. 사고 당시 귀하의 월 급여는 얼마였습니까?(수당을 포함한 총액입니다.)

- ① 49만원 이하
- ② 50~59만원
- ③ 60~69만원
- ④ 70~79만원
- ⑤ 80~89만원
- ⑥ 90~99만원
- ⑦ 100~149만원
- ⑧ 150만원 이상

30. 귀하에게 산업재해 사고가 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 하십시오.

- ① 기계 다루는 솜씨가 서툴렀다
- ② 기계가 고장났다
- ③ 안전장비가 없었다
- ④ 일이 너무 많아 빨리 일해야 했다
- ⑤ 너무 피곤해서 주의력이 저하되었다
- ⑥ 주위가 너무 시끄러워 주의를 기울일 수 없었다
- ⑦ 동료의 실수로 사고가 났다
- ⑧ 기타(_____)

귀하의 귀국 희망 여부에 대해 묻겠습니다.

44. 귀하는 치료가 끝나면(혹은 모든 절차가 끝난 후에) 귀국할 생각입니까?

- ① 즉시 귀국하겠다
- ② 한국에서 좀더 일을 하다가 귀국할 생각이다
- ③ 한국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가 귀국할 생각이다
- ④ 귀국할 생각이 없다(46번 문항으로)

45. 만약 귀하가 귀국한다면 본국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까? (응답 후 47번 문항으로 가시오).

- ① 신체장애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 ② 장사 등 자영업은 할 수 있을 것이다
- ③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④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46. 만약 귀하가 귀국하지 않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본국으로 돌아가도 신체장애로 일하기 힘들기 때문에
- ② 본국으로 돌아가도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 ③ 본국의 가족·친지에게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 ④ 기타(구체적으로: _____)

47. 한국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을 위해 재활 직업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기간중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추가로 훈련수당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① 들은 적이 없다
- ② 알고 있다

48.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활교육은 한국인 노동자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노동자들에게도 교육기회가 주어진다면 귀하는 재활 직업교육을 받을 생각입니까?

- ① 받겠다
- ② 받지 않겠다

49.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재활직업교육에는 광고디자인, 의상디자이너, 산업설비, 정보통신 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재활직업교육을 받고 싶다면 어느 교육을 받고 싶습니까? 반드시 하나만 고르십시오.

- ① 광고디자인과정(컴퓨터그래픽, 광고물제작, 스크린인쇄, 홈페이지제작 등)
- ② 의상디자이너과정(패션디자인, 홈페이지제작, 의류수선, 세탁훈련 등)
- ③ 산업설비과정(보일러취급기능, 고압가스 취급기능, 냉동기 취급기능 등)
- ④ 정보통신과정(웹마스터, 웹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컴퓨터프로그래밍)

질문 문항 해석을 위하여 몇 가지만 추가로 여쭙어 보겠습니다.

50. 귀하가 일하는 회사 또는 공장은 다음 중 어디에 있습니까?

- ① 서울특별시
- ② 부산광역시
- ③ 대구광역시
- ④ 인천광역시
- ⑤ 광주광역시
- ⑥ 대전광역시
- ⑦ 울산광역시
- ⑧ 경기도
- ⑨ 충청남도
- ⑩ 충청북도
- ⑪ 경상남도
- ⑫ 경상북도
- ⑬ 전라남도
- ⑭ 전라북도
- ⑮ 강원도
- ⑯ 제주도

51. 귀하의 교육 수준은 어떠합니까?

- ① 학교에 다닌 적이 없다
- ② 초등학교
- ③ 중학교
- ④ 고등학교
- ⑤ 초급대학(2년제)
- ⑥ 대학교(4년제)
- ⑦ 대학원 석사과정
- ⑧ 대학원 박사과정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재피해사례 50선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재피해사례

50선

사례 차례

- 1) 불법체류자 고용사실이 밝혀지면 곤란하다.
- 2) 손가락 두 개의 보상금으로 한 달치 월급...귀국할 때 주겠다.
- 3) 두 번이나 산재를 당했지만 보상금은 한푼도 주지 않고 오히려 신고를 하다.
- 4) 입국수수료에 대한 이자부담 때문에 합의하다.
- 5) 치료비가 없어 부상이 더 악화되다.
- 6) 법무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보상금 지급유보를 요청하다.
- 7) 재수술이 필요하자 내쫓아버리다.
- 8) 산재로 갑자기 일을 그만두어 회사에서 오히려 손해를 입었다.
- 9) 치료가 필요함에도 일할 것을 요구하면서 불량이 많다는 이유로 45만원의 월급에서 17만원을 감봉하다.
- 10) 산재피해에 3개월치의 임금체불에....
- 11) 손가락 네 개에 위로금 5만원
- 12) 산재신청을 하자 상시 고용노동자가 반으로 줄어들었다.
- 13)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사 나오자 노동자 3명을 친구공장에 숨겨놓다.
- 14) 사고사실을 말하지 말라, 그러나 장해보상금은 줄 수 없다.
- 15) 휴업급여를 착복했던 사업주
- 16) 치료비 전액을 임금으로 상계하겠다.
- 17) 체불임금은 주겠다. 그러나 보상금은 지급할 생각이 없다.
- 18) 입사 4일만에 손가락 세 개 잘리다.
- 19) 36시간 연속근무 후에 산재를 당하다.
- 20) 산재처리에 양심을 품고
- 21) 산업연수생의 산재를 상습적으로 공상으로 처리하던 회사
- 22) 유난히 손이 예뻐던 몽골아가씨

- 23) 기계 잘 모른다, 하지 않겠다....괜찮다, 일해라...
- 24) '아무도 나에게 설명해주지 않았다.'
- 25) 두 번 사고...그러나 한국인동료의 이름으로 치료받아 진단서를 떼 줄 수 없다.
- 26) 치료받으러 가면 육설을 퍼붓던 회사
- 27) 직업병으로 산재승인이 나기까지 기다릴 수 없다.
- 28) 월 임금이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 29) 똑같은 사고를 두 번이나 당하다
- 30) 1인 이상 사업장의 의미
- 31) 나는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적이 없다
- 32) 치료비가 많이 드니 조기퇴원하라.
- 33) 봉합한 손가락 성형은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 34) 기계의 이상을 무시했던 회사...평균임금도 깎았다.
- 35) 믿었던 성직자로부터 사기를 당하다.
- 36) 의사의 부주의로 장애가 남다.
- 37) 회사는 부도나고 직업병에 시달리고....
- 38) 직업병 증명절차는 너무 힘들다.
- 39) '혼란스럽다.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가.'
- 40) 나는 책임없다.
- 41)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직업훈련을 거절당하다.
- 42) 첫 번째 사고치료 후 1주일만에 당한 두 번째 사고.....그러나 두 번째 사고에 대해서는 치료비도 주지 않고 해고하다.
- 43) 산재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 보상금도 지급하지 않겠다. 체불임금도 주지 않겠다. 여권이나 회사로 보내라.
- 44) 불법체류자이니 치료기간 중에 월급 같은 것은 나오지 않는다.
- 45) 노동자만큼이나 산재에 무지하던 사업주
- 46) 산재보상절차를 밟던 중에 단속에 걸리다.
- 47) 24시간 연속근무 중 동료의 폭행으로 실명위기에 처하다.
- 48) 가족이 걱정되어.....
- 49) 남편도 산재환자, 아내도 산재환자
- 50) 장애보상금도 협상의 대상

산재피해사례 50선

외국인 이주노동자 상담지원단체를 찾아오는 이들치고 딱하지 않고, 가슴 아픈 사연을 지니지 않은 이들이 있겠는가마는, 산재피해를 입고 찾아오는 이들은 유난히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주저하는 듯한 언행에 어두운 낮빛, 빛을 잃은 눈동자에 순간적으로 스쳐 가는 분노 혹은 증오의 눈빛이 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이다. 손가락이 잘리고, 팔을 쓸 수 없고, 다리가 꺾이고, 치골이 벌어져 걷기조차 힘든 상태로 상담지원단체를 찾아온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한국에서의 취업생활이 아마도 그들 인생에서 최악의 경험이었을 것이다.

그나마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아 치료비라든가 최소한의 보상금이라도 수령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불행 중 다행이라 하겠으나, 2000년 7월 이전에 재해를 당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 중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의가입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있는 법의 미비로 인해 치료비조차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고통을 겪은 이들도 적지 않았다.

현재는 하나의 사례로서 존재하고 있는 이들.

그러나 종이쪽을 한 장 들치면 안전장치 없는 프레스에 손가락이 싹뚝 잘려나갈 때의 섬뜩함이 느껴진다. 또 한 장 들치면 잘린 손가락에서 핏방울이 뚝뚝 든다. 또 한 장...그들의 가슴을 절망과 분노로 적셨을 피눈물이 아롱져 묻어난다.

그리고,

마지막 쪽을 덮을라치면 깊은 반성으로 마음이 아파 온다. 좀더 친절하게 대해 줄 것을...과연 최선을 다한 것이었을까...좀더 노력했어야 하지 않았을까...밀려드는 상담에 바쁘다는 이유로, 상담원도 사람이기에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이들이 겪었을 고통에 다가가려고 좀더 노력하지 못했다는 자책이 더 이상 종이쪽을 들치기 힘들게 한다.

이들의 사례를 하나하나 훑어보노라니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의 노래가 떠오른다. 1980년대 초반에 한국의 노동운동권에서 불려지던 처참한 노래.

'서방님의 손가락은 여섯 개래요. 시퍼런 절단기에 싹뚝 잘려서 한 개에 5만원씩 20만원을 슬 퍼먹고 돌아오니 빈털털이래. 야-야-야-야'

그 당시 이 노래를 듣던 노동운동권의 사람들치고 가슴이 미어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없었을 것이다.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2000년대가 되어서도, 이 노랫소리가 귓속을 파고든다는 현실이 참담하기 그지없다.

산재를 당했던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동족들끼리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 고국에 돌아간 수많은 피해 외국인 이주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뭉텅 잘려나간 손가락, 훼손 당한 신체를 어루만지며 어떤 노래를 읊조렸을까.

우리는 알 수 없다.

단지 인위적으로 구획 지워진 국경을 넘나드는 공기의 파동으로만 이들의 비명과 신음을 느낄 수 있을 뿐이다. 이 역시 그들을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을 때에야 비로소 느낄 수 있다.

피눈물로 적셔진 이들의 사연들 중 일부를 소개한다.

1) 불법체류자 고용 사실이 밝혀지면 곤란하다.

이란인 레자는 1994년 경기도 수원시 소재 00소에서 일을 하였다. 1994년 12월, 작업 도중 옆에 세워놓았던 무거운 상자가 레자의 손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레자의 왼손 넷째 손가락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사고 후 레자는 회사를 그만두었고 상담소를 찾아왔다. 레자는 사업주와 레자가 반반씩 부담했던 치료비와 치료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받기를 원했다. 상담소에서 사업주와 접촉하였을 때, 사업주는 레자의 왼손 넷째 손가락에는 원래부터 종양이 있었기 때문에 레자가 치료를 받은 것이며 사고와는 무관하다고 강변하였다. 이에 레자가 치료를 받았던 병원의 담당의사에게 연락하여 레자의 상태를 알아보았다. 레자의 왼손 넷째 손가락에 종양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뼈가 저절로 부러지지는 않는 것이고, 의사는 외부적 충격으로 뼈가 부러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첫 치료시에 외상이 있었음을 확인해주었다. 이런 사실을 근거로 사업주와 다시 접촉하자 사업주는 불법체류노동자를 고용한 사실이 밝혀지면 곤란하므로 산재처리에 협조할 수 없음을 밝혔다. 몇 번에 걸친 지루한 설득 끝에 사업주는 마침내 협조해주시기로 동의하였고 상담소에서는 사업주를 만나 요양신청서에 사업주의 확인도장을 받을 수 있었다. 레자는 산재승인을 받았고 장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2) 손가락 두 개의 보상금으로 한 달치 월급...귀국할 때 주겠다.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입국했던 네팔인 블리스는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00섬유에서 1994년 10월에 입사하였다. 그러다가 1995년 2월, 기계에 오른손이 끼어 들어가는 바람에 셋째, 넷째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회사에서는 블리스가 입원하던 기간의 치료비는 지불하였으나 통원치료비는 지불하지 않았다. 당시 블리스는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라서 통원치료비를 모두 자신이 지불하였다. 회사에서는 블리스에게 보상금을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금액이 한 달치 월급에 불과했고, 이 역시 블리스가 출국할 때 주겠다고 하였다. 회사측의 보상금이 너무 적다는 생각을 하게 된 블리스는 상담소를 찾아왔고, 그제서야 통원치료비도 자신이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상담소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고, 통원치료비와 장해보상금, 그리고 회사와 협상하여 블리스의 귀국을 위한 비행기 티켓비용을 받아낼 수 있었다.

3) 두 번이나 산재를 당했지만 보상금은 한푼도 주지 않고 오히려 신고를 하다.

필리핀인 로리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 00판지에서 1994년 6월부터 일을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1995년 9월 사고를 당해 오른손 첫 번째 손가락, 둘째 셋째 손가락의 신경이 절단되는 사고를 입었다. 사고 이후 로리는 회사를 그만두었으며, 회사로부터 치료비 외에는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다. 회사를 그만두었던 로리는 이후 1996년 4월에 다시 재입사하여 일을 하였다. 그리고 1년여가 지난 1998년 3월 다시 사고를 당했다. 두 번째 사고로 로리는 오른쪽 팔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이 때 로리는 체불임금까지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로리는 상담소를 찾았고, 상담소에서는 두 가지 산재에 대해 각각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행히 1995년의 사고가 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여서 두 건 모두 요양신청을 할 수 있었다.

한편 상담소에서 산재신청을 한 데 대해 화가 난 사업주는 로리를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였고, 출입국관리소에서는 상담소측에 로리의 여권번호를 물어왔다. 상담소에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버티는 한편 절차대로 로리의 산재를 진행하였다. 두 건 모두 장애가 남은 상태여서 장애보상금까지 청구하였고 로리는 휴업급여와 장애보상금 모두 지급받을 수 있었다.

4) 입국수수료에 대한 이자부담 때문에 합의하다.

중국교포 정00은 하루 일당 4만원을 받기로 하고 1995년 8월에 서울 소재 00 건설에 입사하였다. 작업장소는 경기도 00군 소재였다. 일을 시작한지 3일째가 되던 날, 출근하여 보니 현장까지 타고 가야 할 자동차의 문이 고장이 나 한국인 기사가 수리하고 있었다. 수리를 하였는데도 차문은 계속 닫히질 않았고 기사가 계속 수리를 하는 동안 정00은 고장난 차문을 붙잡고 앉아있어야만 하였다. 한참 고생한 끝에 차문은 닫히는 것 같았고 정00과 한국인 기사는 차를 타고 현장으로 출발했다. 그런데 차가 달리다가 커브길을 도는 순간, 갑자기 차문이 열렸고, 바깥 쪽으로 몸이 쏠려있던 정00은 열린 차문을 통해 길로 나동그라졌다. 이 사고로 정00은 갈비뼈가 두 개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후 회사에서는 정00에게 치료비를 포함한 580여만원의 돈을 지급하였고, 합의서에 사인을 하게 하였다. 정00은 한국에 산재보상보험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회사측에 산재처리를 수 차례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대신 합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정00은 당시 한국으로 오기 위해 중국에

서 내었던 빚에 대한 5%의 이자를 염려하여 어쩔 수 없이 합의서에 사인을 하고 말았다.

그 이후에 정00은 사고 후유증으로 재수술을 하여야 함에도 돈이 없어 수술을 할 수 없었고, 다시 산재승인요청을 내려 해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산재승인은 할 수 없다는 반응만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후 1년여가 지난 1996년에 정00은 상담소를 찾아왔고 상담소에서는 회사와 접촉하였다. 회사에서는 이 사고를 산재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정비불량의 회사 소유 차를 타고 작업장으로 가던 중에 발생한 사고였기에 산재로 보아야 한다고 상담소는 주장하였다. 회사와 상담소간에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상담소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한번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미 합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서를 반려하였다. 이에 상담소에서는 정00의 합의를 '궁박에 의해 이루어진 합의'로서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를 법률적으로 검토하였으나 결론은 합의사실을 무효로 하기 힘들다는 것으로 내려졌고, 산재승인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포기하여야 했다.

5) 치료비가 없어 부상이 더 악화되다.

중국동포인 권00은 영종도의 신공항공단 건설현장에서 1997년 10월부터 일을 시작하였다. 일을 한 지 9개월이 되던 때 발전기를 운반하다가 발전기가 언덕으로 굴러떨어지면서 권00의 오른쪽 발목을 덮쳤고 그로 인해 발목뼈가 부서지면서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권00은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고 이후 물리치료를 위해 통원하여야 했으나 사업주는 통원치료비를 더 이상 지불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00건설의 하청업자였다. 사업주가 치료비 지불을 거절하자 자비로 치료할 돈이 없었던 권00은 어쩔 수 없이 퇴원하였다. 권00이 퇴원할 당시 병원에서는 수술부위에 염증이 있어 재수술이 필요할 것이라는 진단을 내렸으나 어찌할 방도가 없었던 권00은 현장에 딸린 숙소에서 스스로 찜질을 하고 지냈다. 발목의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거동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사업주는 원청회사인 00건설에서 책임이 있는 것이라는 말만 할 뿐 권00의 치료를 위해서는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다. 권00의 사례를 접한 상담소에서는 원청회사인 00건설과 사업주 양자를 상대로 산재승인을 위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상담소에서 진정서를 제출하자 사업주는 그제서야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통지하였고 권00은 사업주와 합의하여 치료비와 치료기간 중

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6) 법무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보상금 지급유보를 요청하다.

시라지는 1996년 9월 경기도 소재 00밴드에서 일을 하였다. 일을 한 지 3개월 여만에 본래 기계에서 생산된 제품 하나를 빼내고 다른 것을 집어넣어야 하는데 실수로 빼지 않고 다른 것을 집어넣었고, 자신의 실수를 안 시라지가 빼내지 못한 제품을 빼내려고 손을 기계에 넣었다가 기계에 손가락 두 개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회사에서는 치료는 해주었으나 휴업급여와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상담소에서 회사와 연락하여 상황을 파악한 결과, 상시 12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나 산재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회사에서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에는 일단 동의하였다. 그러나 금액에는 서로 차이가 있었다. 상담소에서는 병원에서 판정한 장애등급 10급을 기준으로 요구하였으나 회사에서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 이후 사업주와 다시 통화하였을 때, 사업주는 시라지가 그때 기계를 고장내버렸기 때문에 일도 못하고 거의 부도난 상태라면서 100만원이상은 어렵다고 하였다. 이후 몇 번의 통화를 통해 합의를 시도해보았으나 사업주는 점점 감정적으로 상담원을 대하면서 마음대로 하라는 식이었다. 더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상담소에서는 산재승인을 위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제반 정황을 조사한 후에 시라지에 대한 산재승인통보를 하였다. 이제 남은 것은 장해보상금을 수령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산재신청을 한 데 대해 화가 나 있던 사업주는 출입국관리소에 시라지를 신고할 것이며 시라지가 출국하기 전까지 보상금 지급을 유보해 줄 것을 요구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업주는 자신의 말대로 시행하였다. 출입국관리소에 보상금 지급유보를 요청하였고 출입국관리소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유보를 요청하였던 것이다. 그러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상담소로 연락하여 그런 사실을 통보하였다. 상담소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담당자를 설득하여 일단 장해보상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출입국관리소측에 항의하였다. 몇 번의 전화통화 끝에 근로복지공단은 시라지의 장해보상금을 지급하였다.

7) 재수술이 필요하자 내쫓아버리다.

1996년 6월, 알제리아인 까멜은 경기도 김포에 소재한 00산업에서 일을 하였다. 일을 시작한 지 21일만에 프레스를 다루던 중 왼손 둘째, 셋째 손가락과 오른

손 셋째 손가락이 절단당하는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손가락이 완전히 절단이 되지는 않았고, 병원에서는 까멜의 손가락을 불완전하게나마 봉합할 수는 있었다. 이후 6개월후에 다시 재수술과 물리치료가 필요했고, 치료비는 회사에서 부담하였다. 치료종결 이후 까멜은 회사에서 계속 일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까멜이 부담스러워진 회사는 까멜을 내쫓았고 장해보상금은 물론, 6개월후에 시행할 수술비에 대해서도 한 마디 언급이 없었다. 까멜은 상담소를 찾아왔고, 상담소에서는 제반 정황을 검토한 후 회사측에 재수술비와 장해보상금을 포함하여 800만원의 금전적 보상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거절하였다. 그 사이 알아본 회사의 상황은 까멜에게는 최악이었다. 사고 당시에 사업장에는 한국인 노동자 4명, 외국인 노동자 2명(까멜 포함) 등 6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었다. 분명 산재보험법의 당연적용사업장이었다. 그러나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노동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임의적용사업장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알게 된 사업주는 외국인 1명과 한국인 노동자 2명을 내보냈고 까멜을 포함하여 4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강변하였다. 까멜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길은 없었다. 상담소에서는 민사소송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

민사소송준비를 위해 상담소에서 회사를 방문하였을 때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그 사이 회사는 부도가 났다며 아예 문을 닫아버린 상태였다. 어쩔 수 없이 상담소에서는 까멜을 무료로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를 찾았고, 동시에 까멜을 금전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사회복지재단을 찾았다. 백방으로 노력한 끝에 까멜은 무료로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사회복지재단의 도움으로 귀국할 수 있었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2001년, 호주에 살고 있던 까멜은 한국의 산재보상보험법 적용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시 한국을 찾았다. 그가 한국을 다시 방문한 이유는 지금이라도 자신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그의 다친 손가락은 아직도 굵어져 있었다. 안타까운 상황이었지만 어찌해볼 도리가 없었다.

8) 산재로 갑자기 일을 그만두어 회사에서 오히려 손해를 입었다.

미얀마인 보우는 1996년 12월부터 경기도 부천시 소재 00금형에서 일을 하였다. 사출업무를 담당하던 보우가 사고를 당한 때는 1997년 2월이었다. 사출기가 고장나서 기계를 고치던 중 뜨거운 플라스틱 액체가 갑자기 뿜어져 나와 보우의 얼굴을 덮친 것이다. 얼굴 전체에 화상을 입은 보우는 코로 숨쉬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입 부위의 화상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

화상을 입은 보우는 20여일간 병원에 입원하였고 이후 통원치료를 하면서 2차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1차 수술비 및 치료비를 지불해주었던 회사에서는 2차 수술비 및 치료비에 대해서는 지불할 수 없다고 하였다. 1차 치료기간중의 휴업급여나 심한 화상을 입은 데 대한 장해보상금도 지불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보우는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이 당시 보우는 36만여원의 체불임금도 있었다. 상담소에서 보우의 체불임금과 치료를 위해 접촉하였을 때, 회사에서는 보우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900만원에 상당하는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체불임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보우의 사고에 대한 2차 치료비 및 휴업급여, 장해보상금에 대해서 회사는 '우리 사업장은 4인 사업장이다. 그리고 치료는 끝났고 후유장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협조를 거절하였다.

회사의 거절의사가 완강하여 상담소에서는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다. 이 사실을 안 회사에서는 태도를 바꾸어 '보우의 상태를 이해한다, 보상방법을 알아보고 추후 얘기를 다시 하자'고 협상할 뜻을 비쳤다. 그러면서 회사에서는 계속 4인 사업장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보우의 말에 의하면 사고 당시 분명 5인 사업장이었다. 상담소에서는 보우를 통해 같이 일했던 한국인노동자를 찾기로 하고 마침내 같이 일했던 한국인의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었다. 이런 제반 상황들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5인 사업장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었고, 결국 요양승인 통보를 받을 수 있었다. 이후 화상으로 인한 장애가 인정되어 장해보상금도 수령할 수 있었다.

9) 처료가 필요함에도 일할 것을 요구하면서 불량이 많다는 이유로 45만원의 월급에서 17만원을 감봉하다.

이란인 레자는 1996년 12월에 충남 소재 00산업에서 철 용기를 절단하는 프레스를 다루는 일을 하였다. 그러다가 1997년 4월 자동으로 작동되게 되어 있는 프레스기를 사업주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장치가동을 중지시키고 작동시키게 하였다. 그런 상태에서 레자는 작업을 하였고 오른손 중지 한 마디가 잘리는 사고를 입었다. 그 회사에서는 레자만이 아니라 다른 인도네시아인 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들도 여러 번 재해를 당하였던 적이 있었다. 사고 당시 레자는 병원으로 갔으나 응급처치만을 받고 한 시간만에 다시 돌아와야 했다. 공장으로 돌아온 레자는 이후 통증으로 3일동안 잠만 자고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러자 사업주는 레자가 쉰 3일치 임금을 공제하였고, 장해보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손을 다쳐서 이후 작업하기 어렵다는 점을 호소하였으나 사업주는 계속 작업할 것을 요구하였다. 손이 불편한 상태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레자는 평소보다 불량을 많이 내었고, 그러자 사업주는 불량생산을 이유로 다시 월급에서 17만원을 감봉하였다. 이 때 레자의 한달 월급은 450,000원에 불과하였다. 계속되는 감봉과 사업주의 작업요구, 그리고 잘린 부위의 통증을 견디다 못한 레자는 회사를 그만두었고 상담소를 찾아왔다. 상담소에서 회사와 접촉하였을 때 회사는 산재보상문제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고 상담소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승인을 위해 진정할 수밖에 없었다.

10) 산재피해에 3개월치의 임금체불에....

방글라데시인 아자드는 1997년 2월부터 경기도 양주군 소재 00공업에서 일을 하였다. 일을 시작한지 4개월여가 지난 6월, 작업 도중 기계 내부의 벨트를 감는 도중에 벨트에 손가락이 끼이면서 왼손 둘째 손가락이 절단당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치료를 받으면서 아자드는 사고가 났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하였다. 그런데 1997년 11월부터 임금이 체불되기 시작했다. 11월, 12월 1998년 1월 도합 3개월분의 임금이 체불되자 아자드는 상담소를 찾아왔다. 상담소를 찾은 때에도 아자드의 치료는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아자드는 장해보상금을 받기를 원했고 상담소에서는 회사측과 상의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산재승인에 협조하기를 거부하였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회사의 상황이 좋아지면 주겠다는 말만 하였다. 회사의 상황으로 보건대 체불임금이 해결될 지는 불투명했다. 해서 상담소에서는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였다. 회사측의 협조를 바랄 수 없는 상황인지라 사업주 날인을 비워둔 채로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로부터 1달 보름여가 지난 후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체불임금은 끝내 해결되지 않았다.

11) 손가락 네 개에 위로금 5만원

방글라데시인 이딸은 경기도 광주군 소재 00수지에서 1997년 4월에 입사하였다. 일을 시작한 지 불과 일주일만 지난 4월 25일 프레스에 오른손 손가락 4개가 잘리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가 나자 회사에서는 이딸에게 위로금이라며 5만원을 건네주었으나 이후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다. 그러다가 상담소에서 회사로 연락하자 회사에서는 매우 불쾌한 반응을 보이면서 그제서야 산재처리를 해주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리고 치료 후에도 이딸을 계속 고용하겠다는 뜻을 비쳤

다. 이딸은 자신이 상담소와 접촉한 것에 대해 회사에서 불쾌해하고 계속 고용하려는 뜻을 비치자 갈등하기 시작했다. 방글라데시의 고향에서 하천이 범람하는 바람에 집과 논을 다 잃어버려 어쩔 수 없이 대학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돈벌러 왔던 이딸은 고향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해주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는 데 대한 걱정으로 가득했다. 거기에 이딸은 자신이 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산재승인을 받으면 현재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 외국인들이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안절부절하였다. 그는 회사에서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면 산재신청을 하지 않으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5월이 되었으나 회사에서는 산재처리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6월초가 되어 상담소에서 이딸이 치료받고 있는 병원을 방문하여 문의해 본 결과 그때까지도 회사에서는 요양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소견서를 받지 않았다. 상담소에서는 더 이상 회사의 조치를 기다리지 않기로 하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할 준비를 하였다. 그러던 차 1주일여가 지나자 회사로부터 이딸의 사고에 대해 요양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연락이 왔다. 이후 이딸은 장해보상금까지 받을 수 있었다.

12) 산재신청을 하자 상시 고용노동자가 반으로 줄어들었다.

이디오피아인 위코는 1997년 4월, 서울 소재 00화학에서 일을 하였다. 입사한 지 10일만에 작업도중 기계가 고장을 일으켰고, 회사에서는 기계의 고장을 수리하였다. 위코는 다시 작업을 시작하려던 찰나, 벨트가 조여진 상태에서 가동되어야 하는 기계가 벨트가 조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동되었고, 위코는 넷째 손가락 반마디가 잘렸다. 위코는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도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였다. 회사에서는 위코의 치료비는 지불하였으나 위코의 임금 1달치를 지급하지 않았다.

위코는 상담소를 찾아왔고, 상담소에서 회사와 접촉하였을 때 회사에서는 산재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였다. 사업주의 협조를 구할 수 없자 상담소에서는 진정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였고, 동시에 관할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자 사업주는 며칠 뒤에 상담소로 연락하여 그 사이 체불임금을 다 정산하였음을 알려주었으나 산재에는 여전히 비협조적이었다. 어쩔 수 없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진정서와 요양신청서를 발송하였다. 그런데 위코가 일할 당시에는 분명히 7-8명의 노동자가 함께 근무하였었는데, 진정서를 낼 즈음에는 4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둔갑하여 있었다. 일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았던 터라 위코는 이를 증명할 아무런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회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4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보고 산재승인을 거부하였다. 남은 방법은 사업주에

게서 보상금을 받아내는 일이었다. 그러나 사업주가 협조해줄리 없었다. 위코는 휴업급여, 장해보상금 모두를 받지 못한 채 한국을 떠나가야 했다.

13)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사 나오자 노동자 3명을 친구공장에 숨겨놓다.

미안마인 통은 경기도 남양주군 소재 00실업에서 1997년 3월부터 일을 시작하였다. 일을 시작한 지 20일만에 로울러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고 이로 인해 통의 손가락 한 마디가 절단되었다. 병원에 실려간 통은 병원에 입원하였고, 병원에서는 최소한 7일간의 입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3일이 지나자 사업주는 통을 퇴원시켰다. 제대로 치료가 되지 못한 통의 상처부위가 문제가 되자 사업주는 통을 다시 병원으로 데려갔으며 이후 계속 통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며칠간 통원치료를 받던 통에게 병원에서는 빨리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하였고 통은 다른 병원에 가 보았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도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하였고, 또다시 통은 좀 규모가 큰 병원을 찾아갔다. 그 병원에서는 빨리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였고 통은 사고 23일이 지나 다시 병원에 입원하였다. 이 모든 과정을 통은 혼자 하였으며, 통원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하여야 했다. 통이 3일간 입원한 후 회사로 돌아온 다음날, 사업주는 통에게 회사를 나가라고 하였고, 회사에서 쫓겨난 통은 친구의 자취방으로 가서 기숙하게 되었다.

통은 회사에서 해고당하면서 임금도 모두 지급받지 못하였다. 처음 입사할 때 소위 '깎아놓는 돈'으로 15일치를 포함한 총 89만여원의 임금이 체불되어 있었다. 통은 사고에 대한 도움보다 체불임금에 대한 도움을 얻고자 상담소를 찾아왔고, 상담소에서는 통의 사고가 산재에 해당하니 요양신청서를 내는 문제를 통과 상의하였다. 상담소에서 산재승인을 위해 회사와 접촉하였을 때 회사에서는 웬일인지 선선히 산재신청을 하라고 하였다. 상담소에서는 진단서 등과 함께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발송하였고, 때마침 회사에서는 통의 체불임금을 조만간에 해결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약속을 지켰다.

통이 일하던 당시 사업장에는 5인의 한국인 노동자와 2인의 외국인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었다. 상담소에서는 명백히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라 산재승인이 날 것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의외의 통보서가 도착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사를 나간 결과 사업장이 5인 미만임이 확실하여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였다는 것이다. 상황을 알아보니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사를 나가겠다는 통보를 받고 회사에서는 급히 노동자 3명을 다른 곳으로 옮겼고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둔갑시켜놓았던 것이다. 그날 노동자 3명을 피신시킨 공장은 사업주의

친구의 공장이었고 그 공장에는 통의 친구 3명이 일을 하고 있었기에 사실을 목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상담소는 근로복지공단측의 요양불승인조치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그 사업장이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은 사업장으로 보여'진다는 이유로 심사청구서를 기각하였고 상담소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4) 사고사실을 말하지 말라, 그러나 장애보상금은 줄 수 없다.

방글라데시인 이슬람은 1997년 3월, 경기도 부천시 소재 00회사에 입사하였다. 일을 시작한지 3년여가 되던 2000년 3월, 프레스에 오른쪽 셋째, 넷째 손가락 한 마디가 절단되고 첫째, 둘째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이슬람은 1달 이상을 병원에 입원해야 했고 이후 통원치료를 하였다. 이슬람은 사고에 대한 보상을 원했으나 사업주는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이슬람에게 사고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공장에서 일을 계속 하면 돈을 조금씩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큰 사고를 당했고 평소에도 육을 자주 하는 작업환경에서 계속 일할 맘이 없었던 이슬람은 회사를 그만 두었고 친구집에서 얹혀 지냈으나 통원치료비와 생활비가 없어 친구에게서 돈을 빌려서 생활하는 형편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슬람은 상담소를 찾아왔고, 상담소에서는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업주는 끝내 요양신청서에 사업주 확인도장을 찍어주기를 거절하였다. 상담소에서는 사업주 확인도장을 누락한 채로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다. 요양신청서를 제출하고 난 2개월 후 이슬람은 산재승인을 받았고, 휴업급여와 장애보상금을 수령하였다.

15) 휴업급여를 착복했던 사업주

경기도 오산 소재 00정공에서 일하던 모로코인 마르코는 1997년 4월에 작업시간 중에 오른쪽 발목의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마르코는 이 사고로 아킬레스건을 봉합하는 수술을 받은 후 이후 5개월 동안 통원치료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업주는 마르코가 사고를 당하던 날 병원까지의 교통비로 20,000원을 주었을 뿐 이후 치료비를 전혀 주지 않았다. 마르코가 산재를 당한 지 1달여 후에 병원의 도움으로 마르코는 산재보상보험이 적용되어 요양기간 동안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5개월여의 요양기간 동안 휴업급여는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하였다. 1999년 1월이 되어 마르코는 상담소를 찾아왔고 상담소에서는 마르코의 휴업급여신청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고 늦었지만 휴업급여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다. 이 당시에는 휴업급여청구서 작성에 사업주의 확인도장이 필요하였으나 사업주는 협조할 것을 거절하였다.

상담소에서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휴업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지급되지 않아 상담소에서 이상히 여겨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보았다. 그랬더니 근로복지공단에서는 300여만원에 달하는 휴업급여를 사업주가 이미 수령해갔다는 것이었다. 이에 상담소에서 사업주에게 연락하여 휴업급여를 횡령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사업주는 마르코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은 하였지만 차일피일 미루다가 전액이 아닌 일부만 마르코에게 주었고, 상담소가 다시 항의하자 또다시 일부만을 지급하였고 상담소의 연이은 항의에 마침내는 나머지도 지급하였다.

16) 치료비 전액을 임금으로 상계하겠다.

경기도 소재 00수지에서 일하던 파키스탄인 조니는 1998년 3월에 프레스에 의해 손가락이 절단되었다. 이 사고로 조니는 경기도 김포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와중에 사소한 일로 사업주와 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사업주는 90만원이 넘는 기존의 병원비를 모두 정산하면서 병원을 옮길 것을 종용했다. 사업주의 종용으로 조니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는데, 옮긴 병원에서 청구하는 치료비를 일체 내지 않았다. 조니는 어쩔 수 없이 자비를 들여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거기다 조니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달인 2월과 3월달의 임금과 연장근로수당 등 총 2,200,000원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

조니는 상담소를 찾아왔고, 상담소에서는 회사에 연락해보았다. 그러자 회사에서는 체불임금과 치료비는 이미 다 해결해주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회사측의 이 말은 기존의 병원에서의 치료비를 지불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즉 치료비와 체불임금을 상계한 것이었다. 회사측의 협조를 바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상담소에서는 조니의 사고에 대해 산재요양승인요청을 하였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회사가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은 상태였고 지난 10년간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요양신청을 받아줄 수 없다며 요양신청서를 반려하고 말았다.

17) 체불임금은 주겠단. 그러나 보상금은 지급할 생각이 없다.

감비아에서 온 사피는 1998년 2월, 경기도 수원시 소재 00산업에서 일을 하였다. 사피의 업무는 선반작업이었다. 일을 시작한 지 불과 11일에 사피는 프레스에 오른손 약지 한 마디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피는 상담소를 찾아왔고, 사피는 이 때까지 입사후 지금까지의 총 월급 107만원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 상담소에서 회사에 연락하였을 때 회사에서는 임금은 조만간 지급하겠으나 장해보상금은 지급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상담소에서는 산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며칠 후 회사에서는 합의의제안하는 연락을 하였고, 회사의 계산으로는 근무한 날수를 따져 임금으로 84만여원을 지급하겠고 장해보상금으로 80여만원, 도합 164만여원을 제시하였다. 상담소에서는 사피의 장해등급이 14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장해보상금으로 130만원은 지급해주어야 한다고 제안하였고 몇 번의 밀고 당기는 협상을 거쳐 회사측과 130만원으로 합의를 할 수 있었다.

18) 입사 4일만에 손가락 세 개 잘리다.

파키스탄인 칸은 1999년 8월, 인천시 소재 00공업에 입사하였다. 칸의 작업은 야외용 가스난로 스텐 보호망을 프레스로 절곡하는 한국인 노동자를 도와주는 것이었다. 일을 시작한 지 4일째가 되는 날, 어느 때와 같이 한국인과 칸은 같이 야외용 가스난로 스텐 보호망을 프레스로 자르는 일을 하고 있었다. 한국인이 프레스를 가동시켜 스텐 보호망을 절곡하자 칸은 프레스기계에 놓여 있는 스텐 보호망을 꺼내려고 손을 내밀었다. 그 순간, 한국인의 순간적인 실수로 프레스의 페달을 밟았고, 프레스의 칼날은 칸의 왼손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의 첫마디를 잘라버렸다. 일을 시작한지 불과 나흘만에 사고를 당하고 만 것이다. 칸 역시 대부분의 산재피해를 입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처럼 치료비만을 회사에서 부담하였고 휴업급여 등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다. 상담소에서는 사업주와 연락을 취하여 칸의 요양신청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처음에는 난색을 표하던 사업주는 마침내는 요양신청에 협조하였다.

19) 36시간 연속근무후에 산재를 당하다.

파키스탄인 아사드는 2000년 2월부터 경기도 시흥시 소재 00기공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아사드는 36시간동안 연속하여 노동하였으며, 피로

가 극심한 상태에서 기계마저 이상을 일으켰다. 기계는 이전에도 가끔씩 이상을 일으키긴 했으나 사업주는 제대로 고치지 않았다. 아사드의 사고 이후 사업주는 그제서야 기계를 제대로 고쳤고, 아사드의 사고가 워낙 큰지라 산재보험 절차를 밟아주었다.

20) 산재처리에 앙심을 품고

파키스탄인 알리는 1999년 11월, 경기도 김포 소재 00산업에서 로울러를 다루는 일을 하였다. 2000년 1월, 알리는 로울러에 팔이 말려들어가는 사고를 당했고 이로 인해 오른쪽 팔이 부자유스러운 장애를 안게 되었다. 알리의 치료비는 사업주가 부담하였으나 이후 사업주는 치료비가 비싸다며 치료하고 있던 병원을 옮기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옮긴 병원에서는 알리의 치료를 성실하게 해주지 않았고 알리는 다른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알리가 사고를 당하던 당시 사업주는 한 달 보름치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고 상시 근로자는 8명이었다. 그런데 알리의 사고가 나자 사업주는 4명의 노동자를 해고했다. 이런 상황을 알리로부터 전해들은 상담소에서는 알리의 부상정도가 크기도 하거니와 사업주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즉시 근로복지공단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동시에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상담소의 이런 조치에 대해 사업주는 크게 앙심을 먹었다. 그는 상담소에서 공장을 방문하자 욕을 퍼부었으며 100만원이 부과될 벌금을 낼지언정 80만원의 체불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거절하였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회사에서 사고 이후 4명을 해고하였다는 것을 알아내었고 알리는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사업주는 끝내 체불임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알리는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채 귀국하고 말았다.

21) 산업연수생의 산재를 상습적으로 공상으로 처리하던 회사

스리랑카인 하산은 2000년 6월부터 경기도 안산시 소재 00산업에서 피혁을 다루는 일을 하였다. 당시 하산은 산업연수생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하산은 한 한국인과 함께 기계 하나를 다루고 있었는데, 하산이 가죽을 기계에 세팅하면 다른 사람이 발로 프레스를 눌러 찍어내는 일이었다. 2001년 2월, 어느 때처럼 일을 하던 하산은 기계에 넣은 가죽이 접혀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것을 펴려고 손을 넣은 순간, 옆에 있던 사람이 프레스를 눌렀다. 이로 인해 왼손이 로울러 두 개

사이에 끼이고 말았다. 회사에서는 하산의 사고를 공상으로 처리하였고, 하산은 치료가 끝나면 자신은 본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여기고 이탈하였다. 이후 하산은 상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고, 상담소에서 병원에 전화해 하산의 상황에 대해 문의해보니, 공상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그러면서 병원측에서는 하산이 일했던 회사가 거래처여서 상세한 회사의 상황에 대해 말해줄 수는 없는데, 그 회사에서 여러 사람이 산재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었는데 모두 공상으로 처리했다는 것을 귀뜸해 주었다. 상담소에서 회사에 전화해보니 예상과 같이 회사에서는 산재 처리를 거부하였고 오히려 하산을 공장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다. 하산이 회사를 갈 경우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할 것이 뻔했다. 상담소에서는 회사의 협조를 받을 것을 포기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진정서를 내어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22) 유난히 손이 예뻐던 몽골 아가씨

유난히 손이 예뻐던 몽골 아가씨 나나는 경기도 소재 00화학에서 2000년 3월부터 일을 하였다. 한국어는 한 마디도 하지 못하는 나나의 업무는 프레스 기계를 다루는 일이었다. 나나는 입사한 첫날부터 프레스기계를 만졌고, 일을 시작한지 40일만에 사고를 당해 오른쪽 손가락 네 개를 잃었다. 그 사업장에는 사업주를 포함해 모두 4명이 일하고 있었고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었다. 사업주는 사고가 발생하자 인근 병원으로 옮겨가 수술을 받게 하였다. 사업주는 나나의 수술비, 입원치료비, 통원치료비 등은 부담하였다.

상황이 어찌 돌아가는지를 전혀 몰랐던 나나는 통원치료를 받는 중에 상담소를 찾아왔고, 나나의 사례를 접수한 상담소에서 사업주와 연락하였을 때 사업주는 치료비는 모두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앞으로의 일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나나는 사업주의 말을 믿고 그저 병원을 다니면서 통원치료를 받았지만 사업주가 미리 지불했던 치료비가 바닥나자 병원에서는 나나의 치료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병원에서는 나나가 병원에 올 때마다 상담소에 전화했고, 그때마다 상담소에서는 사업주에게 전화를 하여 치료비를 지불할 것과, 당장 병원으로 전화하여 나나의 치료를 해주라고 말해줄 것을 요구하여야 했다.

지루한 과정과 우여곡절 끝에 나나의 치료는 일단 끝이 났다. 이제 남은 것은 성형수술이었다. 네 개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나나에게 병원에서는 신체 다른 부위의 살을 떼어내 손가락 비슷한 모양으로 잃어버린 손가락 자리에 이식수술을 해놓았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후 모양을 손가락에 근접하게 다듬는 성형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이었다. 상담원이 성형수술에 대해 사업주와 협의하였을 때 사업주는 나나의 성형수술비까지 모두 지불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나나의 보상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질을 주지 않았다.

그런데 그 이후 사업주와는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나나는 공장으로 찾아가 보기도 했지만 사업주는 회사 망했으니 기계를 가져가라는 말만 할 뿐 이후 나나의 수술비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는 폐업하였다. 사업주와는 핸드폰을 통해서만 간신히 연락이 되는 상황이었고 사업주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상담원은 나나의 수술비 마련을 위해 TV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모금을 하는 방법을 고려하였다. 그러던 중 나나가 다니던 교회 목사의 도움으로 수술비는 해결이 되었다. 그러나 나나는 장해보상금은 한푼도 받을 수 없었다.

23) 기계 잘 모른다, 하지 않겠다....괜찮다, 일해라....

이란인 레비는 경기도 포천에 소재한 00회사에서 일을 했다. 일을 한지 17일째 되던 2000년 4월, 사업주로부터 업무변경 지시를 받았다. 사업주는 레비에게 원단을 기계에 넣어 재단하는 일을 맡겼다. 레비는 사업주에게 서툰 한국어로 '기계 잘 모른다. 하지 않겠다'고 거절하였지만 사업주는 '괜찮다'면서 레비에게 재단일을 시켰다. 레비는 서툰 솜씨로 원단을 기계에 밀어넣었지만 그만 기계에 오른손 둘째, 셋째, 넷째 손가락 1/3정도가 절단되고 말았다.

24) '아무도 나에게 설명해주지 않았다.'

이란인 타기푸르는 2000년 4월부터 경기도 소재 00산업에서 일하다가 8월에 환풍기에 팔이 말려드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당할 당시 타기푸르는 5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회사에서는 타기푸르의 사고를 산재로 처리하였고, 타기푸르의 명의로 발행된 통장을 통해 휴업급여가 지불되었다. 타기푸르는 한국어는 한 마디도 하지 못했고 한국의 물정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한편 회사 역시 언어가 전혀 소통이 되지 않은 타기푸르에게 일일이 설명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터라 타기푸르의 산재처리를 알아서 진행하고 있었다. 타기푸르의 휴업급여가 타기푸르의 통장으로 지급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회사에서는 관리자를 타기푸르와 동행하게 하여 은행에서 현금카드를 휴업급여 40만원을 인출하였다. 그런데 관리자는 그 자리에서 인출한 휴업급여를 타기푸르에게 건네주지 않았다. 그리

고 회사에서는 당시 병원에서 장해가 없을 것이라고 한 말을 믿고 타기푸르를 병원에서 퇴원시켰다.

이후 회사는 타기푸르의 휴업급여 40만원에 미지급되어 있던 임금 50만원, 거기에 위로금조로 110만원을 더하여 모두 200만원을 타기푸르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타기푸르는 자신이 병원에 있을 때 의사가 타기푸르가 400만원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던 말만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돈을 회사측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회사에서 200만원만을 지급하자 화가 난 타기푸르는 회사에 100만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고, 회사에서는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거절하였다. 타기푸르와 회사는 한 마디도 말이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서로 옥신각신했고 타기푸르는 회사가 자신이 받아야 할 돈 200만원과 자신의 임금 50만원, 그리고 휴업급여 40만원을 떼어먹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타기푸르는 상담소를 찾아왔고 그 때 당시 타기푸르의 표정에는 말을 붙이기 주저될 정도로 어두움과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상담원은 타기푸르의 말에서 몇 가지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에 주목하였다. 그의 설명에서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이 있었던 것이다. 의문을 가지고 상담소에서 회사측과 병원, 근로복지공단측과 접촉해본 결과 타기푸르가 큰 오해를 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타기푸르는, 의사가 회사에서 지불하였으니 회사에서 당연히 대체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요양비를 포함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총 400만원정도를 지급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회사측에서 모든 금품을 정산하고 위로금조로 100만원을 더 지급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타기푸르에게 남은 절차는 장해가 있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었다. 진단결과 장해가 남음이 인정되었고, 타기푸르는 14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금을 수령하였다. 상담소측의 자세한 상황설명을 들은 타기푸르는 자신이 회사에 대해 오해를 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그제서야 그의 표정에서 적개심이 사라졌다. 오해를 풀 타기푸르가 남긴 말은 다음과 같았다.

“아무도 내게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다. 병원에서도, 회사에서도 나에게 아무 설명이 없었다.”

25) 두 번 사고...그러나 한국인의 이름으로 치료받아 진단서를 댈 수 없다.

필리핀인 지토는 1999년 8월부터 성남에 소재한 00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불과 4일만에 프레스에 오른손 둘째 손가락 한 마디가 절단당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가 나자 회사에서는 치료비를 모두 지불하였으나 치료기간중의 휴업급여와 장해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산재보상보험법이 있는지조차 몰랐던 지토는 그에 대해 사업주에게 요구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치료가 끝나자 회사에서는 지토가 다시 그 회사에서 일을 하도록 조치해주었고 지토는 일을 계속하였다. 다시 일을 시작한 지 7개월이 지난 2000년 3월에 지토는 또다시 프레스에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했다. 평소에도 연장근로를 자주 하였던 지토는 그날 새벽 3시까지 일을 하여야 했고 몹시 졸려운 상태에서 그만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이번에는 왼손 엄지손가락 첫마디였다. 회사에서는 이번에도 치료비는 지불해주었으나 휴업급여나 장해보상금은 지불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 즈음에는 두달치의 임금과 100여 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도 체불되어 있었다.

지토가 상담소를 찾은 것은 산재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위해서라기보다 체불된 임금 때문이었다. 체불임금을 상담하는 중에 그의 사고를 알게 되었고, 이어 사고를 두 번이나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상담소는 지토의 두 번의 사고에 대한 산재승인절차와 체불임금해결을 위한 절차를 동시에 밟아나갔다. 회사에서는 지토의 체불임금에 대해 재정상태가 나쁘다면서 지급을 거절하였다. 그리고 산재승인을 위한 절차에 대한 협조도 거부하였다. 상담소에서는 두 사안 모두 진정할 수밖에 없었다. 지토의 산재승인은 쉽게 내려졌다. 1,2차 모두 산재승인이 떨어진 것이다.

그런데 지토의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청구서를 작성하던 중에 의외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지토는 1, 2차 사고 모두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2차 사고에 대한 기록은 병원에 있었으나 1차 사고에 대한 기록이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지토의 1차 사고는 자신의 이름이 아닌 회사에 근무하던 한국인노동자의 이름으로 처리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병원에서 지토의 이름으로 장해진단서를 떼어주기를 거부했다. 이유는 타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즉 타인의 의료보험증을 사용하여 지토를 치료한 것이 알려지면 병원에서는 영업정지조치를 당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완강하게 1차 사고에 대한 장해진단서 작성을 거부하였다.

완강한 병원의 태도에 상담소에서는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 2차 사고는 절차대로 진행하는 한편, 다른 병원에 상황을 전달하고 장해진단서를 발부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갖춰야 할 서류가 새롭게 늘어나고 시간은 늦어졌다. 많은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지토는 1차 사고에 대한 장해보상금도 수령할 수 있었다. 지토가 상담소를 찾아온 때가 5월,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다음 해 3월이었다.

26) 치료받으러 가면 욕설을 퍼붓던 회사

방글라데시인 샤니는 인천시 소재 00회사에 2000년 6월 22일에 입사하여 일을 하다가 7월 5일에 사고를 당했다. 이 회사는 기계부품을 제작하는 회사였는데 모터에 있는 편에 오른손 다섯째 손가락이 절단된 것이다. 이 사고로 샤니는 1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통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사업주는 더 이상의 치료를 해주기를 노골적으로 거부하였고, 사고가 난 후 치료기간의 휴업급여도 지불하지 않았다. 게다가 샤니가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겠다고 하면 욕설을 퍼붓기까지 했다. 상담소에서는 회사와 연락할 필요도 느끼지 않아 근로복지공단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진정서 제출한 지 한달 보름여만에 요양승인이 났다.

27) 직업병으로 승인이 나기까지 기다릴 수 없다.

파키스탄인 샤샤는 서울시 소재 00섬유에서 1999년 8월부터 일을 시작했다. 샤샤의 일은 텍스타일 완성품이 들어 있는 박스를 들고 지하실로 나르거나 지하실에 있는 박스를 지상으로 들어올리는 일을 하였는데 박스의 무게가 개당 22kg-55kg사이였다. 이 회사는 주야 맞교대였는데 작업시간이 주간작업시 11시간 야간작업시 13시간이었다. 2000년 8월 샤샤는 어느 때와 같이 박스를 들고 지하실로 내려가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후 간신히 일어설 수는 있었으나 박스를 들 수 없었다. 허리 부상 이후 샤의 업무는 바뀌어서 야간조로 배치되어 기계를 조작하는 일을 하였다. 그럼에도 허리통증은 계속되었다. 샤샤는 자신의 허리통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통증이 낫지 않자 3개월여가 지난 후에야 K의료를 찾아갔다. 그곳에서 X-ray 검사를 받았다. K의료원에서는 샤샤의 병명을 추간판 탈출증 의증과 요추부 염좌로 진단 내렸다. 이후 샤샤는 병원을 다니면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일반의료수가를 지불해야 하는 샤샤로서는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할 수 없이 K의료원 통원치료를 중단하고 샤샤는 지역의 빈민들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해주는 병원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샤샤는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허리의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고, 샤샤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다. 가진 돈을 다 쓰고도 치료에 기약이 없게 되자 혹시나 하는 생각에 샤샤는 상담소를 찾아왔다.

상담소에서 K의료원과 지역병원에 연락하여 샤샤의 증세에 대해 문의하는 과정에서 상담소에서는 두 병원 모두 샤샤의 발병원인과 직업과의 연관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진료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상담소에서는 샤샤의 허리 통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므로 산재승인요청을 내자고 하였고, 샤샤는 동의하였으나 당장의 치료비조차 없었다. 상담소에서는 샤샤의 산재승인이 날 때까지 무료로 치료해줄 수 있는 병원을 물색하였고, 다행히 한 병원에서 샤샤를 산재승인이 날 때까지 무료로 치료해줌과 동시에 샤샤의 산재승인에 관한 제반 절차를 진행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한달 후, 병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샤샤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샤샤의 친구를 통해 샤샤의 행방을 물색해본 결과 샤샤는 허리의 통증도 힘들었고, 무엇보다 생활비를 충당할 돈이 없어 본국으로 귀국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28) 월 임금이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카자흐스탄인 레자는 2000년 1월부터 충청도에 소재한 석재공장에서 일을 하였다.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그는 2000년 8월에 사고를 당했다. 콘베어벨트를 따라 움직이던 커다란 돌덩이가 어떤 이유인지 콘베어벨트의 궤도를 벗어났고 그 돌덩이가 무슬림의 손가락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레자의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의 뼈는 분쇄골절상을 입었다. 레자는 병원으로 실려가 수술을 받았고 부서진 손가락뼈를 맞추었다. 그 뼈가 고정되도록 가운데 손가락에 심을 박았다. 여기까지의 치료비로 600여만원이 들었고 치료비는 사업주가 부담하였다. 이후 레자는 상당 기간 매일 통원치료를 하였고, 한달 여정도 통원치료를 하던 레자는 상담소를 찾아왔다. 레자가 상담소를 찾아온 이유는 입사한지 이미 두 달이 넘어가고 있었는데 한푼의 월급도 받지 못하였다. 레자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세 사람의 카자흐스탄인과 같이 상담소를 찾아왔고, 상담원은 체불임금에 대한 상담을 하던 중에 레자의 사고에 대해 알게 되었다. 상담원은 레자를 치료한 병원에 전화를 하여 산재보험 적용여부를 물었다. 레자의 병원비는 의료보험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그 공장에 다니던 다른 한국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치료받고 있었던 것이다. 담당의사와 직접 통화를 하면서 상담원은 사업주가 레자의 사고에 대해 최선을 다해 치료해주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레자는 산재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알지 못했다. 상담원은 레자에게 일단 회사와 접촉하여 산재보험으로 레자의 사고를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회사와 접촉하였다. 사업주는 산재처리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레자가 초과체류자인지라 초과체류자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상담원의 설명을 들은 사업주는 협조할 것을 약속하였다. 상담원은 레자의 편에 요양신청서를 들려보냈다. 그러나 협조하겠다는 사업주는 의외로

시간을 끌었고, 상담원은 수 차례에 걸쳐 사업주에게 독촉하였다. 한달여가 지난 후 상담원은 사업주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레자의 이름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진정서를 제출하고 난 얼마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이 왔다. 그 사이 회사는 부도가 나버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하던 노동자들은 모두 어딘가로 가버렸고, 진정서에 기재한 사업주의 핸드폰은 아직 살아있었으나 도무지 사업주와 연결이 되질 않는다는 것이다. 상담소에서는 그야말로 수십 번을 전화버튼을 눌렀다. 마침내 어렵사리 사업주와 통화가 되었고, 사업주는 레자의 산재승인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사업주는 그 약속을 지켰고 근로복지공단에 출두하여 레자의 사고경위 등에 대해 진술했다. 그런데 그 얼마 후,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이 전화를 했다. 문제가 생긴 것이다. 애초 진정서를 제출할 때 상담소에서는 레자의 월급여를 70만원이라고 기재했었다. 그런데 사업주가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월 급여가 50만원이라고 진술한 것이다. 그런데 이를 반박할 증거나 증인을 찾을 수 없었다. 상담소에서는 일반적으로 레자와 같이 한국어도 매우 서툴고 일도 서툴지만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인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월급여가 70만원-75만원선이라는 것과 레자가 분명히 70만원으로 사업주와 계약하였음을 항변하였지만 상황은 어려웠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업주와 연락하여 다시 한번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면서도 사업주와의 연락이 거의 두절된 점을 들면서 난색을 표했다. 그리고 일단 시간이 더 필요했다. 그 동안 레자는 가끔 상담소를 방문했다.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하니 의사소통이 될 리 없지만 그가 얼마나 낙담하고 힘겨워하는지는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 그는 한시라도 빨리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다. 의사에게 문의한 바로는 레자가 빨리 물리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현재 강직상태를 보이고 있는 다친 손가락이 영영 회복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거기에 물리치료를 마친 후에는 손가락에 박아놓은 심을 제거하는 수술도 받아야 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측의 말로는 요양승인이 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민에 고민을 하던 상담원은 레자를 불러 러시아어를 하는 자원활동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설명해주었고 레자의 의견을 물었다. 차라리 월 급여가 50만원이었음을 인정하고 산재승인을 빨리 받겠는지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하는 기준으로 처리될 때까지 좀더 기다릴 것인지. 월 급여가 50만원이라고 인정하더라도 장해에 대한 보상금은 최저기준이 적용되어 월 급여 70만원을 기준으로 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불될 것이라는 추가설명을 해주었다. 절망의 기색이 레자의 얼굴을 스쳐갔고 레자는 월급여 50만원에 대해 동의했다. 상담원은 참담한 심정으로 진정서에 기재했던 월 70만원이 잘못된 것이었다

는 내용으로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공문을 보냈고, 그리고 2-3일이 지나자 레자의 사고에 대해서 산재승인이 되었다. 레자가 사고를 당하고 6개월이 지난 후였다.

29) 똑같은 경위로, 똑같은 사고를 두 번이나 당하다

이집트인 마흐무드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 00가구에서 2000년 12월 29일부터 일을 하였다. 일을 시작한지 20일만인 2001년 1월 20일, 마흐무드는 트럭에 올라가 의자 등 완성된 가구를 실어놓고 내려오다가 트럭에서 떨어지면서 무릎이 꺾여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한의원에서 1일간 입원하고 1주일간 매일 통원 치료를 받았다. 사업주는 1일간의 입원비는 지불하였으나 그 치료비 55,000원을 후에 급여에서 공제하였다. 그리고 1주일간의 통원치료비는 본인이 지불하였다. 사고후 마흐무드는 10개월간 계속하여 00가구에서 일을 하였다. 그러다가 2001년 11월, 마흐무드는 2001년 1월의 사고와 똑같은 경위로 사고를 당하여 무릎을 다쳤으며 이번에도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마흐무드의 사례를 접한 상담소에서 회사와 접촉하였을 때, 회사의 입장은 마흐무드가 이집트에서부터 지병이 있었기 때문에 산재로 처리해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마흐무드가 지병이 있었다는 말은 사실이였다. 마흐무드는 이집트에 있을 때 사고로 무릎을 다친 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 무릎의 부상이 재발되거나 통증을 느끼거나 한 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상담소에서는 설사 마흐무드가 이집트에서 무릎을 다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흐무드의 부상은 업무상장해에 해당하며 산재보상보험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이 당시 마흐무드는 평소 다니던 모 교회의 도움을 받아 치료비 일체를 무료로 하고 있었다. 상담소에서는 마흐무드에게 요양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지만 치료비를 무료로 하고 있던 마흐무드는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다가 12월이 되었고, 마흐무드는 때마침 실시된 초과체류자 과태료 면제기간을 맞아 이집트로 귀국하였다.

30) 1인 이상 사업장의 의미

2001년 6월부터 경기도 부천시 소재 00산업에서 일했던 파키스탄인 알리는 2001년 8월, 프레스에 왼손 넷째 손가락의 힘줄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알리가 일을 하던 시기에 그 회사에는 알리 외에 파키스탄인 한 사람이 일을 하고 있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어서 알리는 치료를 받으러 다니면서도 회사에서 계

속 일을 하였다. 그런데 처음 치료비를 부담했던 회사에서는 그 치료비를 알리의 임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이후 알리는 치료비를 자신이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회사는 두달치의 임금까지 체불하였다. 막막해진 알리는 상담소를 찾아왔고, 상담소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진정서를 제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이 왔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당시 알리 혼자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런 경우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에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외의 말을 하였다. 근로복지공단에 출두한 사업주의 진술에 의하면 노동자를 고용하여 일을 하기도 했고 그렇지 않기도 했으며, 알리가 일을 할 당시에는 알리와 사업주의 부인 두 사람만이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상담소에서는 분명 진정서에 목격자로서 동료 파키스탄인을 거명하였음을 지적하였고, 또한 설사 알리 혼자 일을 하였다 하더라도 산재보상보험법은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강제적용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제조사에 들어갔고 알리는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31) 나는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적이 없다.

파키스탄인 샤는 경기도 남양주시 00상사에서 사출작업을 하고 있었다. 2001년 8월에 입사하였던 그는 10월, 사출작업을 위해 비닐을 기계에 넣다가 비닐과 함께 손가락이 딸려 들어가는 바람에 오른손 둘째 손가락 첫 마디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에 대해 사업주는 치료비와 휴업급여는 지불하였으나 장애보상금은 지급할 뜻이 없었다. 상담소에서 장애보상금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회사에 전화하였을 때, 회사에서는 놀랍게도 전의 사업주는 회사를 그만 두고 충청도 쪽으로 이사를 갔으며, 자신은 새로 인수한 사람이라는 말을 하였다. 자신은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적이 전혀 없고, 샤라는 사람은 알지도 못한다고 딱 잡아떼었다. 이에 대해 샤에게 확인해본 결과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상담소에서는 더 이상 사업주와 접촉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 즉시 이런 내용들과 목격자 이름을 적어 근로복지공단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그제서야 사업주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사업주는 이번에는 산재절차를 밟으면 서로에게 좋은 일이 없지 않느냐는 말로 샤를 회유하기 시작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을 받으면 샤 역시 출입국관리소에 의해 강제출국당해야 하니 합의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었다. 사업주의 말에 겁을 먹은 샤는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는 데 대해 갈등했고, 결국 사업주와 합의하고 말았다.

32) 치료비가 많이 드니 조기퇴원하라.

이란에서 드림을 연주하던 호세인은 경기도 파주시 소재 00회사에서 2001년 4월부터 일을 시작하였다. 이 회사에서는 신발을 생산하고 있었고 호세인은 신발제조를 위한 로올러를 사용하고 있었다. 입사한 지 10일째 되던 날, 호세인은 연장근로로 야간작업에 투입되었고 로올러 2대를 관리하면서 신발을 제조하던 중, 로올러에 손이 말려들어가면서 오른손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이 절단되기도 하고 운동에 현저한 장애를 보였다. 이날 밤에 호세인은 병원에 입원하였고, 병원에서는 16일정도 입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사업주는 8일만에 돈이 많이 든다며 호세인을 퇴원시켰다. 이후 호세인은 통원치료를 받았다. 당시 호세인은 월 84만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사업주는 4월의 월급여일에 50만원을 지급하였다. 상황을 알지 못했던 호세인은 자신이 근무한 날수를 계산해보니 월급여는 25만원이면 된다고 생각하였고 사업주에게 월급은 25만원인데 왜 50만원을 주었는지를 물었다. 사업주는 이에 대해 25만원은 월급이고 25만원은 통원치료비라고 하였다. 그러나 25만원으로는 통원치료비로는 부족하였다. 통원치료비 25만원을 다 써버린 호세인이 사업주에게 다시 치료비를 달라고 하자, 사업주는 호세인에게 돈이 없으니 이란으로 돌아가라는 말만 하였다. 난감해진 호세인은 상담소를 찾아왔다.

호세인이 사고를 당할 당시 사업주는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호세인의 말에 의하면 그가 다치고 난 3일 후 사업주는 또 다른 이란인을 채용하였고 그가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란인은 현재 입원해있다는 것이다. 연이은 똑같은 사고발생에 경악한 상담원은 먼저 호세인을 위해 호세인이 치료를 받았던 병원과 연락을 취해보았다. 호세인을 통해 파악한 상황에 의하면 사업주는 호세인을 위해 요양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병원에 연락하였을 때 의외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업주가 호세인의 사고에 대해 뒤늦게 요양신청을 해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호세인 이후 똑같은 사고를 당한 다른 이란인이 입원해 있는 병원과 연락을 취해보았을 때 전말을 알 수 있었다. 사업주는 다른 이란인이 큰 사고를 당하자 그제서야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했던 것이다. 이후 호세인은 순조롭게 휴업급여와 장애보상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

33) 봉합한 손가락 성형은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사례 31)의 호세인의 친구인 토니는 호세인이 손을 다치고 난 3일 후인 2001년

4월에 같은 공장에 채용되었다. 그는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했다. 토니는 호세인의 손가락을 자른 기계를 가동시키면서 일을 하였고, 일을 시작한 지 1주일만에 호세인과 똑같은 사고를 당했다. 기계는 토니의 오른손 손가락 네 개를 싹둑 잘라 버렸다. 그가 사고를 당하고 나자 사업주는 그제서야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하여 토니의 사고를 산재로 처리해주었다. 이후 토니는 휴업급여며 장해보상금 등을 모두 규정대로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토니의 사고를 산재로 처리해준 후 사업주는 그 기계를 손보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다른 외국인노동자를 채용하여 일을 시켰다.

그런 토니가 상담소를 찾아온 것은 모든 절차가 끝나고 한참이 지나서였다. 그가 상담소를 찾아온 이유는 성형수술 때문이었다. 치료가 끝났음에도 다친 손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있던 그가 붕대를 풀어 상담원에게 보여주었다. 잘린 손가락 부위는 신체의 다른 부위에서 떼낸 살로 이식을 하여 정상 손가락 절반만한 크기로 만들어 붙여져 있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정말 놀라웠다. 모양만 손가락 비슷할 뿐이지 손톱도 없고 끝은 두툼하면서 몽푹하고 정상적인 손가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주름이며 마디 같은 것이 전혀 없는데다 색깔은 살색 비슷한 그 손가락들은 차라리 소시지에 흡사했다. 그 손가락들을 보여주며 토니는 처음 수술을 하였을 때 의사가 6개월이 지나면 성형수술을 해야한다고 하였고, 성형수술을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 비용이 걱정되어 상담소를 찾았노라고 하였다. 상담원이 병원과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를 하여 재요양신청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였는데 결과는 이런 경우의 성형수술은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이 되는 것이며 때문에 재요양신청이 불가하다는 답변이었다. 토니의 손가락 성형수술은 말이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이었지도저히 사람들 눈앞에 내놓을 수 있는 모양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로 분류되고 재요양대상이 되지 않았다. 결국 방법은 동정심 많은 의사에게 수술비를 감면해달라고 부탁하는 수밖에 없었다. 상담소에서는 여러 경로로 토니의 손가락 성형수술을 저렴하게 해줄 수 있는 의사를 찾았다. 다행히 이사로 계신 양길승 원진녹색병원 원장님의 도움으로 한 사람을 찾을 수 있었다. 상담소에서는 이 기쁜 소식을 토니에게 전해주었다. 연락을 받은 토니는 상담소를 찾아왔다. 처음 우리 상담소를 찾은 이후 몇 개월이 지나서였다. 그 사이 토니는 달라져있었다. 뺨이 그럴 수 없이 홀쭉해져 턱이 아주 뽕족해져있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져있었다. 증오로 가득 찬 눈빛이었다. 아주 조심스럽게 의사를 찾았다고 말하자 토니가 통명스레 물었다. '한국사람이냐'고. 그렇다고 하자 토니는 '한국사람은 믿을 수 없다'며 상담소를 뛰쳐나가고 말았다. 그 이후 토니와는 연락이 되지 않

았다.

34) 기계의 이상을 무시했던 회사... 평균임금도 깎았다.

이란인 로즈는 2001년 경기도 소재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로즈가 사용하던 기계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주어야 했다. 그런데 매일 너무 바빠서 기계를 점검할 시간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로즈는 기계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고 공장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별 이상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로즈는 작업을 다시 재개했다. 그런데 로즈가 작업을 하다 보니 기계와 기계 사이에 불량이 끼고 말았다. 로즈는 기계를 멈추고 기계 사이에 낀 불량품을 꺼내려고 하였다. 로즈가 불량품을 꺼내고 있는 사이 로즈의 반대편에서 서로 맞물려 돌아가게 되어 있던 기계가 오작동되면서 로즈의 손가락을 덮쳤다. 이 사고로 로즈는 오른손 둘째 손가락 세 번째 마디 1/2까지 절단당하였다.

사고 당시 로즈의 한달 월급은 기본급 800,000원이었으나 연장근로가 워낙 많아 사고 전 3개월간 평균 1,150,000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로즈가 상담소를 찾았을 때 로즈는 사고 전 두 달분의 월급봉투를 가지고는 있었으나 석 달전의 것은 소지하지 않고 있었다. 사업주는 로즈의 치료비는 지불하였으나 휴업급여며 장해보상금은 지불을 거절하였다. 상담소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진정서를 내었고, 둘째손가락에 장애가 남다 보니 보상금이며 휴업급여가 만만찮았다. 사업주는 합의할 엄두도 내지 못했고, 로즈는 무난히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로즈의 통장으로 입금된 휴업급여와 보상금의 금액을 보니 뭔가 이상했다. 로즈의 상담을 받으면서 계산해보았던 휴업급여나 보상금보다 현저하게 금액이 적었다. 보상금을 수령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보상금 지급통보서가 도착하였다. 거기에 적혀 있는 로즈의 평균임금은 확실히 상담소의 계산보다 적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본 결과, 사업주가 출석하였을 때, 로즈의 월 임금은 800,000원으로 진술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업주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로즈나 상담소에게 사실확인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상담소에서는 로즈가 제시했던 월급봉투를 근로복지공단에 우송했고, 이후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로즈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두 달치뿐이었다. 본래대로라면 장해보상금을 추가로 300만원을 더 받아야 했음에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두 달치만을 인정하였기에 로즈는 250만원만을 더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모든 절차가 끝나고도 로즈는 이란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어느 날 상담소를 찾아온 로즈에게 계속 한국에 있을 것인지를 묻자 로즈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런으로 갈 수 없다. 내가 손가락을 잘랐다는 얘기를 아내에게 했더니 아내가 손가락을 자른 사람의 손가락을 잘라 가지고 오라. 그렇지 못하면 올 생각 마라 고 했다. 아직도 이런에서는 남의 손가락 자른 사람은 자기 손가락을 잘라야 한다. 그런데 내가 누구 손가락을 잘라가야 하느냐”라고. 그는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그렇게 말했다.

로즈는 일자리를 찾으려 헤매었고, 다친 손가락 때문에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다고 한탄했다. 로즈는 일자리를 찾으려 다닐 때면 다친 손가락이 보이지 않게 짐짓 주먹을 꼭 쥐고 ‘일자리 있어요?’라고 묻는다고 했다. 그러던 그가 한동안 연락이 끊겨 그가 취직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나자 그는 다시 상담소를 찾았다. 이번엔 체불임금때문이었다.

35) 믿었던 성직자로부터 사기를 당하다.

나이 50세가 넘은 가나인 유레는 2001년 10월, 경기도 소재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트럭에 합판을 실어 올리다가 합판이 쏟아지면서 유레를 덮쳤다. 순식간에 합판더미에 깔린 유레는 정신을 잃었고, 잠시 후 깨어났으나 움직이기 힘들었다. 병원에 실려가 진찰을 받아보니 ‘다발성 늑골골절’과 ‘치골접합부 이개’라는 진단이 나왔고, 총 치료기간은 10주로 진단이 나왔다.

유레에게는 그 사업장을 소개해주던 모 교회의 목사가 유레의 사고후 제반 절차를 도와주었다. 목사는 유레의 치료비를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경우에 치료비를 의료보험수준으로 감면해주는 병원의 협조로 치료비를 감면받게 했고 치료비는 사업주가 부담했다.

며칠간 입원한 후 퇴원했던 유레는 계속되는 치골 부위의 통증에 시달렸지만 목사나 사업주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에 상담소를 찾았던 유레는 10주간의 치료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상담원은 사업주와 접촉하였다. 그러나 사업주는 휴업급여를 지불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 정확한 상황을 알기 위해 목사와 접촉하였던 상담원은 목사로부터 ‘산재처리를 하지 말고 자신에게 맡겨달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유레는 상담소에서 진행해주시기를 원했고, 마침내 상담원은 유레의 사고에 대해 산재승인을 위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진정서에 대한 답변이 와야할 시한을 넘기고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는 아무런 답이 없었다.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으로 전화하였던 상담원은 근로복지공단의 담당자로부터 유레가 40만원을 받고 진정취하서에 사인하였으며 그 취하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종결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제대로

라면 유레는 140만원 가량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믿을 수 없었던 상담원이 유레의 사인이 기재되어 있는 진정취하서를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고, 받아본 진정취하서의 사인은 유레의 사인이 아니었다. 그리고 사업주를 대신해 목사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유레를 불러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 목사는 사업주가 20만원을 주었다고 했고 20만원을 받기 위해 자신이 있는 교회로 오라는 내용의 전화를 했었다는 것이다. 상담원은 유레에게 진정취하서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고, 진정취하서에 날인된 유레의 사인은 유레가 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상담원은 근로복지공단에 진정서를 제출했던 진정인을 만나 확인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3자인 목사가 날인하고 제출한 진정취하서를 받아들인 데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다시 진행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목사는 수 차례에 걸쳐 유레와 상담원에게 전화를 하였고 사인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는 말은 하였으나 여전히 산재처리를 중지해줄 것으로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미 목사에 대해 어떤 신뢰도 할 수 없었던 유레는 목사와의 접촉 자체를 거부하였다. 유레는 목사의 행위에 대해 충격을 받은 듯 몇 번이나 ‘놀랍다’를 연발하였다. 상담원은 근로복지공단에 절차대로 진행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마침내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36) 의사의 부주의로 장애가 남다.

가나에서 축구선수였던 베니는 한국의 모 프로축구단에 입단 오디션을 치르기 위해 한국에 왔다.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못하여 프로축구단에 입단하지 않았던 베니는 그대로 한국에 눌러앉아 버렸고, 공장에서 일을 하였다.

2001년 10월에 경기도 광주 소재 공장에서 일하던 베니는 프레스에 오른 손셋째손가락 뼈가 압계손상당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갔던 베니는 X-ray 촬영을 하였고, 그에 따라 치료를 받았다. 사업주는 베니의 치료비만 부담하였고 여타의 보상이나 휴업급여 등은 일체 지불하지 않았다. 임금까지 체불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베니는 상담소를 찾았고, 상담을 하는 과정에 그의 임금이 체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전 회사에서도 임금이 체불되어 있음을 알았다. 당연히 그는 극심한 빈곤에 처해 있었다.

상담소에서는 먼저 베니의 임금체불을 해결하기로 했다. 두 회사 모두 접촉하였고, 약간의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두 회사의 임금체불을 비교적 빠르게 모두 해결할 수 있었다. 임금체불이 해결된 이후에 상담원은 베니의 산재승인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사업주가 산재승인에 비협조적인 것은 이미 확인한 터라 상담원은 회사와 상의없이 즉시 베니의 산재승인을 위한 절차를 밟아나갔다. 그리고 병원과

접촉하여 베니의 지속적인 치료를 부탁하고 산재절차를 도와줄 것을 부탁하였다. 병원에서는 산재승인이 날 때까지 치료비를 나중에 받기로 하는 등 협조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런데 베니는 아직도 상당기간 물리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는데 치료비는커녕 사고 이후 거주지를 서울로 옮기면서 경기도에 소재한 병원까지 치료를 받으러가기 위한 교통비조차 여의치 않은 상태였다. 상담원은 베니의 주거지에 가까운 병원들을 백방으로 수소문하였고 마침내 한 병원으로부터 어렵사리 산재승인이 날 때까지 베니의 물리치료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협조를 약속받았다. 전원하게 된 베니는 그 병원에서 다시 한번 X-ray촬영을 하였다. 정형외과 전문의였던 의사는 베니의 X-ray촬영을 다각도로 시도하였고, 그 결과 또 다른 부상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넷째 손가락의 뼈에도 이상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먼저 병원에서 베니에게 건네준 X-ray필름에는 그런 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먼저 병원에서 베니의 손가락을 다각도로 촬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방향으로만 촬영하였고 그로 인해 또 다른 손가락의 뼈가 벌어져 있었음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만약 사고 초기에 이런 사실을 알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았더라면 그 손가락의 뼈는 원상회복되었을 것이라는 것이 의사의 진단이었다. 베니는 이후 산재승인이 날 때까지 무료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지속적인 물리치료 덕분에 다친 손가락 중 하나는 조금씩 운동성을 회복해가고 있었다. 그러나 초기 치료를 놓쳤던 넷째 손가락은 영영 회복되지 않았다.

37) 회사는 부도나고 직업병에 시달리고...

파키스탄인 바비는 아이스크림을 대형포장에 담아 실어내 가는 공장에서 일을 하였다. 바비의 업무는 개당 20kg이 넘는 아이스크림이 든 상자를 트럭에 옮기는 것이었다. 그 공장에서 일을 시작한 지 석달 만인 2001년 6월에 바비는 허리에 통증을 느꼈지만 그리 심하지는 않았고 일을 쉴 수가 없어 아픔을 참으면서 계속 일을 하였다. 그러나 바비의 요통은 낫지 않았고 점점 심해졌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공장은 부도가 나서 문을 닫고 말았다. 어찌할 수 없게 된 바비는 9월이 되어서 상담소를 찾아왔고, 상담소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였다. 회사가 문을 닫은 상태에서 바비의 요통이 직업성 재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증인이 필요했다. 회사쪽 사람들과는 일체 연락이 되지 않았다. 회사는 큰 회사의 하청공장였고, 사업장도 원청회사의 부지 안에 있었다. 원청회사에서는 바비가 그 공장에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 바비가 일하던 시기에 다른 파키스탄인이 한 사람 같이 일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사람과는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 여러 경로를 거쳐 마침내 동료였던 파키스탄인의 연락처를 알아냈고, 상담소에서는 목격자로서 그를 근로복지공단에 알릴 수 있었다. 이후 바비는 요통이 직업성 재해임을 인정받았다. 그때가 12월이었다. 어렵사리 직업성재해를 인정받았지만 바비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상담소에서는 뒤늦게서야 바비가 처한 상황을 모두 파악할 수 있었다.

바비의 재해가 발생한 달은 6월, 그런데 요양승인이 난 기간은 8월-9월까지였다. 그리고 바비는 9월 이후 매달 1번 정도씩만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다. 바비가 상담소를 찾아온 때는 9월이 되어서였고, 상담소에서는 그때부터 요양승인 절차를 밟았고 부도난 회사에 재해에 대한 목격자 등을 찾는데 시간이 걸린 터라 다음해 1월이나 되어서야 요양승인이 났고 그 사이 바비는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고만 상담소에 알려주었으니 상담소로서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답변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승인에 대한 통보서를 상담소가 아닌 병원으로 보내주었고, 그 통보서에 의하면 재해발생일은 6월이나, 요양승인이 난 기간은 8월-9월 두 달간뿐이었다. 이런 사실을 알 리 없었던 상담소로서는 산재승인이 떨어진 데 대한 기쁨으로 6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의 휴업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휴업급여신청서를 제출한 지 1개월여 지나서 바비로부터 연락이 왔다. 돈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상담소로서는 신청한 휴업급여가 모두 들어온 것으로 알 수밖에 없었다. 그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상담소가 상황의 전체를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난 때였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된 휴업급여가 청구액보다 훨씬 적은 액수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된 상담소에서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한 결과 요양승인기간이 두 달간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상담소에서는 병원을 방문하여 재요양신청서 작성을 해주기를 부탁했다. 병원에서는 거절했다. 그 이유는 한 달에 한번 정도밖에 병원에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바비는 담당의사의 처방에 따라 집에서 약을 복용하였고, 그 이유는 집에서 병원까지 한번 오가는데 교통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래저래 바비의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상담소측의 실수라고밖에 할 수 없었다.

수습은 어려웠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바비는 9월 이후의 기간도 요양기간으로 인정받았고, 휴업급여도 받을 수 있었다. 다음에는 재해발생일인 6월부터 7월까지의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일이었다. 이 기간중에 바비가 지불했던 병원치료비를 요양비로 청구하였다. 병원에서는 일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 스스로도

납득하지 못했다.

어찌되었건 바비는 그 동안 병원측의 업무실수와 상담소측의 실수로 1월에는 모두 받을 수 있었던 휴업급여와 요양비를 5월이나 되어서야 받을 수 있었다.

38) 직업병 증명절차는 너무 힘들다.

방글라데시인 사이드는 2001년 서울 소재 00공업에서 알루미늄빔으로 계단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다. 무거운 알루미늄 빔을 들어 계단의 골조를 세우는 일을 한지 한달 여만에 사이드는 허리에 통증을 느꼈다. 처음엔 허리통증이 그다지 심하지 않았던 사이드는 얼마 후 그 공장을 그만두고 다른 공장을 찾아 일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허리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나중에는 움직이는 것조차 힘이 들었다. 두 번째 공장조차 그만둔 후 일을 하지 못하고 쉬고 있던 사이드는 나중에는 치료비조차 여의치 못해 상담소를 찾아오기에 이르렀다. 상담소에서는 산재승인을 받게 하고 싶었다. 사이드에게 허리를 다쳤던 상황과 공장이 현재 가동 중인지 확인해 보았더니 공장은 이미 폐쇄한 상태였다. 그리고 사이드의 허리부상을 증명해줄 사람도 없었다. 그렇게 상황을 확인해 나가는 와중에 사이드는 연락이 끊겼다. 나중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이드는 결국 산재승인절차를 포기하고 귀국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39) '혼란스럽다.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가.'

가나인 알리는 경기도 김포시 소재 00금속에서 2001년 2월부터 일을 하였다. 그가 하는 일은 금속을 압출하는 일이었다. 2001년 9월, 금속판을 알리가 잡고 있는데 공장장이 그만 프레스기기를 가동했고, 손가락이 프레스기기에 압착되면서 왼손 셋째 손가락 1마디가 절단되고 둘째 손가락 1마디의 굴신이 부자유스러운 부상을 입었다. 알리가 사고를 당하자 사업주는 즉시 병원으로 데려갔고 이후 알리는 상당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사업주가 알리를 찾아와 알리에게 어떤 서류를 내놓으면서 사인하라고 말을 하였고 그리고 알리의 여권을 달라고 하였다.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알리와 영어를 못하는 사업주와는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았다. 덜컥 겁이 난 알리는 서류에 사인도 하지 않았고 여권을 주지도 않았다. 사업주는 여러 차례 알리에게 사인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알리는 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알리는 손에 붕대를 감은 상태에서 상담소를 찾아왔다.

그를 통해 상황을 들어본 상담소에서는 사업주에게 연락을 취했고, 사업주는 마침 잘되었다는 듯이 상담원에게 호소했다. 알아본 즉 사업주는 알리의 사고를 산재로 처리하기 위하여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알리의 사인이 필요해 사인해 줄 것을 말했지만 알리가 극구 거절하였다는 것이다. 그러자 회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알리의 사인을 받지 않은 채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알리의 여권을 가져오라고 하였는데도 알리가 여권을 주지 않아 제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병원에 전화하여 보았다. 그리고 알리의 사고에 대해 산재승인이 이미 났음을 알 수 있었다. 상담소에서는 알리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해주었다. 그리고 여권 사본을 만들어 사업주에게 줄 것을 알려주었다.

알리는 모든 것을 답답해했다. 그는 이후의 자신의 일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고, 따라서 사업주를 믿을 수도 없었다. 산재승인이 난 데 대해서도 알리는 미심쩍어했다. 그리고 사고 이후 자신은 임금을 못 받고 있는데 왜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는지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상담원이 산재를 당했을 때 이후의 진행과정과 치료기간중의 임금은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다는 점에 대해 설명해주자 알리는 그제서야 사업주가 사인을 요구했었던 것이며 여권을 달라고 했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왜 휴업급여를 70%만 지급하는 지에 대해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알리는 어쨌든 휴업급여 70%를 빨리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사업주가 휴업급여를 신청했는지를 알아봐 줄 것을 요청했다. 상담소에서 사업주에게 연락하여 문의하자, 사업주는 휴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알리의 통장사본이 필요한데 알리가 통장사본을 주기를 거부하고 있다며 매우 답답해했다. 다시 알리와 접촉하여 빨리 여권사본과 통장사본을 사업주에게 건네줄 것을 당부하였다. 상담소에서 알리의 여권사본과 통장사본이 왜 필요한지를 수 차례에 걸쳐 설명해주고서야 알리는 상담원의 설명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다.

공교롭게도 알리가 미심쩍어할 일은 계속 발생했다. 알리가 치료받고 있던 병원이 마침 건물신축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알리는 병원을 옮겨야 했다. 사업주와 연락하여 전원신청을 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전원된 병원에서 알리는 계속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알리의 물리치료는 예상외로 시간을 오래 끌었다. 애초 예정했던 물리치료기간이 끝났는데도 의사가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자 알리는 또다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들었다. 그는 병원의 의사나

원무과 담당직원이 무어라고 한 말에 대해서 반드시 상담소를 찾아와 확인하였다. 그 과정은 끝없이 되풀이되었다. 나중에는 병원 원무과에서도 은근히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그도 그럴 것이 본인이 자꾸만 통증을 호소하니 치료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고, 2차, 3차 휴업급여 등을 병원에서 모두 제출해주고 있음에도 의문이 반복되니 말이다. 그러나 알리는 다른 사람이 어떻든 간에 자신이 납득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반복하여 의문을 표시하곤 하였다.

드디어 알리의 치료가 끝나고, 알리는 사업주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의사의 검진을 받았다. 그러자 알리의 의문이 또 생겼다. 알리는 상담원으로부터 들었던 자신의 장해등급에 대해 당장 알고 싶어했다. 그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검진한 의사도, 사업주도, 근로복지공단의 직원 모두가 한국어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자신에게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는 것이 불만이었고, 또한 불안해했다.

상담원이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몇 번을 얘기하였지만 그는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장해등급을 알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할 수 없이 상담원은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장해등급을 미리 알려주기를 부탁하여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알리는 계속 고개를 갸웃하면서 왜 지금 장해등급을 알 수 없는지를 이해하지 못해했다. 모든 절차에 대해 몇 번씩 곱씹어 보면서 납득을 강요당했던 알리가 상담원에게 남긴 말은 '혼란스럽다.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가'였다.

40) 나는 책임 없다.

이란인 존은 인천 소재 00(주)에서 일을 한지 1달여만인 2002년 6월에 사고를 당했다. 큰 사고는 아니었고, 치료비는 사업주가 지불하였지만 존은 휴업급여를 받기를 원했다. 그런데 상담소에서 회사와 접촉하였더니, 회사에서는 의외의 말을 하였다. 존은 평소 잘 아는 인력소개센터를 통해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산재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아니라 인력소개센터에 있다는 것이었다. 상담소에서 존에게 상황을 확인하여본 결과, 존은 모 인력소개센터에서 소개를 받아 00(주)에 취업하였으며, 하루의 일당은 60,000원, 그 중 10%인 6,000원을 매일 인력소개센터에서 공제한다는 것이었다. 상담소에서 인력소개센터에 전화해보았더니, 인력소개센터에서는 존을 00(주)에 소개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인력소개센터의 말인 즉, 존이 임의로 00(주)를 찾아갔던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두 회사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었다. 휴업급여가 40여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

아 합의를 주선하려고 하였던 상담소에서는 합의주선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근로복지공단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피진정인으로는 존이 취업했던 00(주)와 인력소개업체 양쪽을 하였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존의 휴업급여 지불책임은 00(주)에 있음을 인정하였고, 그제서야 00(주)는 합의할 의사를 밝혔다. 존은 00(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고 진정서를 취하하였다.

41)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직업훈련을 거절당하다.

파키스탄인 하메드는 2001년 3월에 서울 소재 00인쇄소에서 일을 하였다.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인쇄기에 오른 팔이 말려들어가면서 사고를 당했다. 하메드가 일하던 사업장의 사업주는 하메드에게 매우 호의적이어서 자발적으로 산재신청을 해주었고, 몇 개월이 흐른 후 치료는 종결되었다. 그러나 하메드의 치료는 종결은 되었지만 앞으로 1년 6개월 후에 손등에 박은 심지를 제거하는 재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 기간동안 하메드는 한국을 뜰 수가 없었다. 사업주는 하메드의 업무를 바꿔주면서까지 하메드를 데리고 있었다.

하메드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등급을 받기 위해 의사 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피해자를 위한 직업훈련에 대한 홍보를 하였다. 그 내용은 장해등급을 받은 산재피해자는 직업훈련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훈련수당을 받으면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메드가 초과체류자인데 상관없느냐는 상담원의 질문에 근로복지공단의 담당자는 '문제없다'라는 대답을 하였다. 하메드는 직업훈련에 큰 관심을 가졌다. 그는 영어를 상당히 구사할 수 있었고, 한국어 역시 교육을 받기에 지장이 없었다. 또한 컴퓨터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메드는 그 중에 정보통신과정에 관심을 가졌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운다면 본국으로 돌아가서도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상담소에서는 하메드의 소망을 이뤄주기 위해 직업훈련원에 하메드의 입소를 신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며칠 뒤에 도착한 답변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합법체류자인든 불법체류자인든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분명 관련법에는 '한국인 산재피해자에게만 실시한다'는 규정은 없었다. 이는 명백한 국적에 의한 차별이었다. 상담소에서는 하메드에게 직업훈련원의 방침이 차별에 해당되니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의사를 물어보았고 하메드는 이에 동의하였다. 마침 다른 상담소에서도 하메드처럼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있었다. 두 상담소는 각각 관련 서류를 만들어 2001년 3월 두 사

람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진정인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서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 건은 아직 진행중이다.

42) 첫 번째 사고처로 후 1주일만에 당한 두 번째 사고.....그러나 두 번째 사고에 대해서는 치료비도 주지 않고 해고하다.

가나인 사무엘은 2000년 5월부터 그해 12월까지 경기도 소재 00금속에서 일을 하였다. 이 기간 중에 사무엘은 두 번에 걸쳐 산재사고를 당했다.

첫 번째 사고는 2000년 11월에 일어났다. 프레스 작업도중 발생한 이 사고로 사무엘은 오른손 둘째 손가락끝이 잘려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사고난 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사업주는 작업을 시켰다. 산재에 대한 지식은 물론 한국어는 하나도 하지 못하던 사무엘은 사업주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첫 번째 사고가 나고 10일간의 치료가 끝나고 불과 1주일만에 사무엘은 두 번째 사고를 당했다. 두 번째 사고는 롤러에 손이 들어가면서 발생했고 이 사고로 사무엘은 왼쪽 손 넷째 손가락 한 마디가 잘려 봉합수술을 받았다. 사업주는 사무엘이 첫 번째 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치료비와 치료기간중의 휴업급여를 지급해주었다. 그러나 두 번째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자비를 들여 치료를 받고 있는 사무엘에게 사업주의 아들은 사무엘이 회사를 그만 둘 것을 종용했다. 아직 치료도 끝나지 않았는데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을 들은 사무엘은 그날로 기숙사를 나왔고 그 며칠 후 상담소를 찾아왔다. 사무엘은 1, 2차 사고에 대해 장해보상금을 받고 싶어했다.

상담소에서 회사에 연락하였을 때, 회사의 반응은 차가웠다. 담당부장은 치료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담소가 연락을 취한 사실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쾌해했다. 그러면서 치료비며 휴업급여를 모두 지급했으며, 기숙사에서 말없이 나가 버려 연락이 안된다는 것이다. 사무엘에게서 이미 대강의 상황을 들은 터라 상담소에서는 치료비는 사무엘이 지급했으며, 사업주의 아들이 나가라고 하여서 기숙사에서 나가게 된 것임을 일깨워주었다. 그러나 회사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사무엘의 치료비를 지급하려고 병원에 갔더니 이미 사무엘이 치료비를 다 지급했더라는 것이다. 치료비를 환급해주려고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으니 회사로 사무엘을 보내달라는 것이었다. 회사의 말을 어쩐지 믿기가 어려웠지만 일단 치료비를 환급해주겠다는 말에 사무엘은 회사로 갔다. 그러나 막상 사무엘이 회사에 가자 회사에서는 사무엘에게 욕을 퍼부

으며 치료비를 돌려주지 않았다. 상담원과 얘기한 내용과 너무 다른 반응을 사무엘로부터 전해들은 상담소에서는 즉시 회사로 연락하였다. 회사쪽에서는 사무엘에게 병원에 가서 치료비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상담원의 추측으로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무엘이 그 말을 알아들었을 것 같지가 않았고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 사무엘에게 회사에서는 화가 나서 욕설을 퍼부은 것 같았다. 아무래도 서로간에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회사쪽에서는 상황을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아들이 영어를 잘 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될 리 없다고만 강변했다. 회사에서는 그저 빨리 사무엘건을 마무리짓고 싶어하기만 했다. 그러나 만약 사무엘에게 장애가 남는다면 장해보상금 문제를 협의해야 했기 때문에 회사측의 희망대로 빨리 마무리 지을 수는 없었다.

상담소에서는 사무엘의 손가락에 장애가 남는지에 대해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할텐데 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타협조로 물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상담소에서 알아서 하라, 사무엘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런 것까지 해줘야 하는가 라며 통명스럽게 대꾸하면서 진단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려 했다. 그런 회사측에게 일단 상담소에서 진단을 받고 비용을 추후 회사에 청구하겠노라고 통고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 사무엘로부터 연락이 끊겨버렸다. 후에 확인한 바로는 치료기간중의 휴업급여와 치료비는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것은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사무엘의 장애 잔존 여부와 장해보상금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43) 산재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 보상금도 지급하지 않겠다. 체불임금도 주지 않겠다. 여권이나 회사로 보내라.

한국어를 한 마디도 못하는 이란인 아미드는 1999년부터 경기도 광주군 소재 00밸리에서 일을 하였다. 그의 일은 톱을 사용하는 일이었다. 그러다가 2001년 봄, 아미드는 작업중에 사고를 당했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손톱부분이 절단되고 오른손 둘째손가락과 왼손 엄지손가락 역시 손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아미드는 왼손 엄지손가락은 봉합하는 수술을 받긴 했으나 오른손 둘째손가락과 함께 굽혀지지 않는 장애를 입었다. 아미드의 치료비는 공상으로 처리되고 있었고, 아미드는 자신의 부상에 대해 어떤 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아미드가 상담소를 찾아온 것은 산재사고와 관련해서보다 임금 때문이었다.

사업주는 아미드의 치료비를 공상으로 처리하면서도 치료비 명목으로 도합 두 달치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치료가 끝난 후에도 그 회사에서 일을 하였던 아미드는 같은 국적의 친구로부터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을 도와주는 상담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상담소를 찾아왔다. 그때는 모든 치료가 종결되고 나서 10개월이 지나서였다. 아미드의 상황을 파악한 상담소에서는 산재에 대한 대처와 함께 체불임금해결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상담소에서 회사와 접촉하자, 회사에서는 아미드의 사고를 산재처리해줄 수 없고, 장해보상금을 지급하지도 않을 것이며, 월급 역시 지급할 수 없다고 통고하였다. 그러면서 한 술 더 떠 아미드의 여권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것은 곧 초과체류자인 아미드를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겠다는 의미와 같았다.

상담소에서는 더 이상 회사와 접촉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고 일단 산재사고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진정하였다. 그런 한편 체불임금해결을 위해 계속 회사와 접촉하였다. 수 차례의 임금해결요구에도 계속 확답을 미루기만 하던 회사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아미드의 산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상담소에서 체불임금에 대해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며 이번에는 노동부에 진정하겠다는 통고를 하자 그제서야 반응이 달라졌다. 마침내 회사에서는 회사가 아미드의 치료를 위해 지출했던 병원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면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대답을 주었다. 병원비는 요양비 대체지급청구를 하면 환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 협조를 부탁하였다. 이후 아미드의 산재승인절차는 별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아미드의 문제는 모두 해결되었다.

44) 불법체류자이니 치료기간중 월급 같은 것은 나오지 않는다.

파키스탄인 샤는 한국에 먼저 와있던 고교 동창을 따라 한국에 왔다. 경기도 포천군 소재 신발공장에서 일을 하던 샤는 꽤 오랫동안 일을 하였다. 그의 일은 이른 바 다이를 사용하여 신발을 찍어내는 일이었다. 이 다이는 정기적으로 교체 해주어야 했다. 샤가 입사한 지 10개월이 다 되어가던 때인 2001년 가을, 어느 때처럼 샤는 다이 교체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기계가 오작동되면서 샤의 왼손 셋째, 넷째 손가락의 일부가 잘리는 사고를 당했다.

샤는 가까운 병원으로 실려가 치료를 받았다. 그 병원에서 며칠 입원하면서 수술과 급한 치료를 마치고 사업주는 샤의 병원을 옮길 것을 종용했다. 치료비가 너무 비싸다는 이유였다. 사업주는 샤를 사업주가 잘 아는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그

병원은 서울에 있었다. 샤는 공장에 딸린 기숙사에 기거하면서 서울까지 통원치료를 하여야 했는데 차비가 만만찮았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샤의 치료비는 지불해주었으나 치료기간중의 휴업급여는 지급해주지 않았다. 샤의 치료는 오래 끌었고, 샤는 월급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포천에서 서울까지 치료받기가 너무 힘들었다. 그러자 샤를 한국으로 오게 했던 샤의 친구는 샤의 사장님을 만나 샤의 월급을 지급해줄 것과 병원이 너무 멀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회사의 대답은 차가웠다. 회사에서는 '샤가 불법체류자이니 월급 같은 것은 나오지 않는다, 치료만 하라, 그리고 병원비가 많이 들어서 월급을 줄 수 없다, 혹시 서울에 친구가 있으면 친구네 집에서 기숙하든가 기숙사에 계속 기거하든가 맘대로 하라'는 말만 하였다.

샤와 샤의 친구는 상담소를 찾아왔다. 상담소에서는 회사와 연락하여 샤의 휴업급여와 병원 전원에 대해 요청하여 보았지만 회사의 대답은 변함이 없었다. 더 이상 회사와 협의할 필요가 없어 상담소에서는 샤의 사고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한 결과 회사는 산재보험에 가입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회사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에도 협조적이지 않았다. 시간은 흘렀고 그 사이 샤의 치료는 모두 끝이 났다.

그러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아예 요양신청서, 휴업급여청구서, 장해보상청구서, 샤의 산재 관련 절차에 필요한 세 종류의 서류 모두에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주었다. 근로복지공단의 도움으로 샤는 다시는 사업주와 부딪치지 않고도 한번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었다.

45) 노동자만큼이나 산재에 무지하던 사업주

몰도바에서 온 발리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슬리퍼 제조회사에서 일을 하였다. 브로커를 통해 그 회사에 입사한 발리는 일을 시작하였다. 발리의 일은 금형에서 찍혀져 나오는 슬리퍼를 꺼내어 기계 옆으로 놓아두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 슬리퍼를 다른 노동자들이 마무리손질을 하곤 하였다. 일을 시작한 지 3개월여 되던 2001년 여름, 발리는 어느 때와 같이 금형에서 찍혀져 나온 슬리퍼를 꺼내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은 유난히 주변이 소란스러웠다. 슬리퍼 마무리 손질을 하던 아주머니들이 소란을 떨었고 그 소리들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던 발리는 그만 슬리퍼를 꺼내는 때를 잘못 선택하여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이 사고로 발리의 오른손 둘째손가락 첫째마디가 절단당했다. 그 회사에서는 얼마 전에 한국인노동자도 같은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다. 발리는 치료가 거의 끝나갈 즈음에 그 공장을 빠져 나와 서울로 와 상담소를 찾아왔다.

상담소에서 사업주와 접촉하였을 때, 사업주는 초과체류자의 경우에도 산재보상보험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산재보상보험법이 적용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산재승인이 나면 그 동안 사업주가 발리의 치료를 위해 지불했던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았고, 산재절차에 협조할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주는 발리를 고용하기 위해 자신은 브로커에게 10만원을 지불했는데도 사고가 발생하자 브로커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발리를 다른 공장으로 빼돌렸다고 불평했다. 이후 사업주는 자신이 약속한 대로 발리의 산재승인에 협조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주는 산재절차에 대해 무지하여 사업주가 협조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상담소에서 조력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었다. 그런데 서울에 소재한 상담소에서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사업자와 접촉하려니 애로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거기에 발리 역시 도무지 어느 지역에서 취업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사업장이나 관할 근로복지공단 방문을 제때제때 하지 않았다. 약속날짜가 몇 번이나 연기되고 시간이 지체되기 시작했다. 같은 사안이었으면 벌써 끝났어야 할 발리의 산재절차는 지루한 과정을 거쳐 훨씬 많은 시간이 흐른 끝에 마침내 모든 절차가 끝나고 발리는 장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그런데 발리의 사례가 해결되고 난 20여일 후 사업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다. 자신이 환급받아야 할 요양비가 행정처리가 잘못된 것 같다는 것이다.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된 요양비는 청구한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다면서 발리의 장해보상금이 얼마나 지급되었는지를 물었다. 발리의 장해보상금이 발리의 월 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되었다는 것을 안 사업주는 자신이 받아야 할 요양비가 발리의 장해보상금으로 지급된 것이 분명하다며 필쩍 뛰었다. 그리고 되돌려 받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분명 요양비 대체지급절차를 거쳤음에도 요양비가 그렇게 처리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고, 발리의 장해보상금은 산재보상보험법상 최저기준이 적용되어 적정한 금액이 지급된 것이었지만 상담소에서는 일단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았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필쩍 뛰었다. 그러면서 그 사업주가 그 동안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아 체납보험료로 충당되어 요양비가 청구액보다 적게 지급된 것일 것이라고 설명해주었다.

상담소에서 다시 사업주와 연락하여 그런 사실을 설명해주고 나서야 비로소 발리의 사례는 모두 끝이 날 수 있었다.

46) 산재보상절차를 밟던 중에 단속에 걸린다.

타일랜드인 마사는 2001년도에 경기도 소재 00공업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 회사에서 1달만에 왼손 셋째손가락 1마디와 넷째 손가락 두 마디가 잘리는 사고를 입었다. 마사는 일을 할 수 없었고 사업주는 치료비는 지불하였으나 장해보상금에 대해서는 마사에 대해 아무 말도 없었다. 모든 치료가 끝났음에도 장해에 대해 어떤 말도 없자 마사는 자신의 손가락이 절단된 데 대해 장해보상금을 받고자 상담소를 찾아왔다.

회사에서는 마사의 산재승인에 협조할 뜻이 없어 상담소에서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연락한 후 비로소 사업주는 마사의 산재처리에 협조할 것을 약속하였다. 남은 절차는 장해보상청구였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사업주의 협조약속을 전해들은 상담소에서는 사업주의 확인도장을 받기 위해 사업주와 약속을 정하고 장해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마사에게 들려보았다. 상담소에서 접촉할 때에는 협조할 뜻을 밝혔던 사업주는 정작 마사를 찾아가자 태도가 달라졌다. 사업주는 마사를 한동안 공장 안에 앉혀두더니 아무런 말도 없이 공장을 나가버렸다. 사업주를 한참 기다리던 마사의 일어나 공장을 나와 채 몇 걸음 걷지 않았을 때,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직원이 마사를 붙잡았다. 마사를 그 자리에서 출입국관리소의 직원에 의해 외국인보호소로 옮겨졌다. 마사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상담소에서는 즉각 출입국관리소로 연락하여 마사를 산재를 당한 사람이며 현재 산재승인절차를 밟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동시에 손가락이 절단당하여 누구의 눈에도 산재사고를 당한 사람임을 알 수 있음에도 마사를 잡아간 사실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였고 마사를 풀려났다. 풀려난 마사로부터 출입국관리소직원에게 잡히게 된 경위를 들은 상담소에서는 사업주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사업주 확인도장란을 비워둔 채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가 담당직원을 만나 전후 사정을 얘기하고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마사를 요양승인 및 휴업급여청구서, 장해보상청구서 모두에 사업주 확인을 누락한 채 제출하였고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다.

47) 24시간 연속근무 중 동로의 폭행으로 실명위기에 처하다.

2002년에 이란인 하산은 경기도 소재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 공장에는 하산을 포함하여 모두 3명의 이란인과 여러 한국인들이 일을 하고 있었다. 하산과 이란인인 자히르는 같은 조였다. 이 회사는 1일 12시간씩 근무하면서 격주로 주야

맞교대 근무체제였다. 그리고 휴일은 격주 일요일이었다.

어느 날, 토요일에 사업주는 하산과 자히르에게 제안했다. 다음날이 휴일이지만 24시간 연속하여 일을 해주면 일당으로 10만원을 주겠다고. 처음에는 24시간 근무는 너무 힘들다며 거절하였지만 '싫으면 나가라'는 사업주의 말에 하산과 자히르는 일요일 오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24시간 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다.

오전 8시부터 일을 시작한 하산과 자히르는 다음날인 새벽 1시경이 되자 너무나 피로해졌다. 하산의 일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했다. 하산 못지 않게 힘이 들던 자히르는 또 다른 이란인을 전화로 불러내 세 사람이 같이 일을 하게 되었다. 1시간 가량이 지나자 자히르와 하산간에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유는 '왜 일을 빨리 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자히르보다 일손이 빠르지 않았던 하산에게 자히르는 빨리 일을 하라고 다그쳤고, 말다툼은 싸움이 되었다. 하산은 자히르에게 주먹으로 왼쪽 눈을 얻어맞았다. 다음날 하산은 병원으로 갔고, 이후 하산의 왼쪽 눈은 점점 시력이 저하되기 시작했다. 병원에서는 두어 달 후에는 시력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상담소에서는 비록 가해자가 있는 사고이긴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시점이 근무시간중이었고, 사고의 원인이 작업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중시했고, 이런 경우 산재로 인정한 판례가 있음을 알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그러나 일은 여의치 않았다.

문제는 사업주는 완강하게 그날은 휴일이었고 하산의 부상이 작업시간중에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부인하였다. 목격자가 필요했다. 그러나 가해자였던 자히르는 그 직후 회사를 그만두었고, 목격자였던 또 다른 이란인은 동료인 이란인에게 '사장님이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을 전하며 증언하기를 거부하였다. 그리고 그 회사를 그만두었다. 하도못해 상담원에게라도 진실을 말해줄 것을 부탁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근로복지공단에 출석하여 진술도 하고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적어 산재승인요청서를 보완하기까지 하였지만 하산과 자히르가 그날 그 시간에 일을 하고 있었고, 작업시간중에 다툼이 벌어진 것이라는 것을 증언할 사람이 없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불승인결정을 내렸다.

48) 가족이 걱정되어.....

이란인 자멸은 경기도 소재 00수지에서 몇 년간을 일을 했다. 그의 일은 하루 종일 서서해야 하는 일이었다. 언제부터인가 그는 다리가 아파움을 느꼈지만 어찌

해볼 도리도 없고 해서 그저 참고 일을 하였다.

그러던 그가 2002년에 상담소를 찾은 것은 체불임금 때문이었다. 상담소에서 연락해보니 사업주는 자신도 아주 힘든 상황이라면서 체불임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사업주는 첫 번째 지급일을 지켰다. 그러다가 두 번째 지급일을 2주 정도 앞둔 날, 자멸은 상담소를 찾아와 이란에 있는 딸이 몹시 아파 이란으로 급히 돌아가야 할 일이 생겼으니 지급일을 앞당겨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주와 몇 번 접촉해보고 요청해보았으나 사업주는 주고 싶어도 돈이 없다며 오히려 지급일을 10일 후로 약속하였다. 1차 지급일을 지킨 것이나 제반 상황으로 보아 약속한 날에는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상담소에서는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자멸을 설득하였다. 그 와중에 상담소에서는 자멸에게 질병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자멸은 자신의 바지를 걷어올려 보였고, 그의 왼쪽 종아리는 정맥류로 울퉁불퉁 보기 흉하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통증을 꽤 심하게 느끼고 있었다. 상담소에서는 정맥류에 대해 설명해주고 산재신청을 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자멸은 거절하였다. 알고 있지만 당장이라도 이란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것이다. 그의 말에 의하면 딸이 심하게 아플 뿐만 아니라 그의 부인이 당장 돌아오지 않으면 이혼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는 것이다. 자멸은 아무리 돈을 벌면 뭐하느냐며 안절부절하였다. 그가 이란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으로 취업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상담소에서는 그에게 산재신청을 권유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몇 번에 걸친 설득에도 자멸은 완강하게 거절하였고 끝내 귀국하였다.

49) 남편도 산재환자, 아내도 산재환자

소니는 태국 여자이다. 그녀는 남편과 같이 한국에서 취업하고 있었다. 어느 날, 남편은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고 그 사고로 오른 손가락 다섯 개 모두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 소니는 한편으로는 일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남편의 간호에 열중하다가 2002년 여름에 그만 자신도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이 사고로 소니는 오른손 셋째 손가락 한 마디가 절단되었다. 소니의 치료비는 사업주가 지불하였다. 남편의 사고로 산재보상보험법에 대해 조금 알고 있었던 소니는 사업주에게 장애보상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사업주는 겨우 손톱 조금 잘린 것 가지고 보상금 달란다며 조금도 지불할 뜻이 없었다. 소니는 상담소를 찾아왔고, 그리 큰 금액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었음에도 사업주와 합의는 되지 않았다. 상담소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진정을 하였고,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출석하여서도 소니의 부상이 가벼운 것이고 손톱 절반 정도 잘린 부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소니는 한 마디가 잘린 것이었고, 소니는 장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50) 장해보상금도 협상의 대상

파키스탄인 모하메드는 경기도 광주 소재 OO회사에서 2년이 넘게 일을 하다가 2002년에 사고를 당해 둘째손가락 한 마디가 절단되었다. 모하메드는 알루미늄을 절단하는 일을 하였는데 그 회사에서는 산재사고가 가끔 발생하였었다. 회사에서는 치료비를 지불하였고 치료기간 중의 급여는 100% 지급하였으나 보상금은 전혀 주지 않았다. 상담소에서 회사와 연락하여 보니, 회사에서는 모하메드의 사고에 대해 모하메드가 일부러 사고를 유발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회사가 모하메드에 대해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하메드 역시 회사에 대해 감정이 좋지 못했다. 모하메드는 퇴직금도 받아야겠다고 말했고, 퇴직금과 장해보상금을 합계한 금액에서 회사에서 치료기간중에 지불한 100% 임금 중 30%의 임금을 공제하고 보니 총 500여만원 가까이 되었다. 모하메드는 회사와 합의한다면 400만원은 받아야겠다고 만약 회사에서 400만원보다 적게 주겠다고 퇴직금은 노동부에 진정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상담소에서는 모하메드의 뜻대로 회사와 접촉하였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500여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200만원으로 합의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면서 상담소측의 400만원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니 깎자고 자꾸 말하였다. 상담소에서는 400만원이 이미 회사측을 많이 배려해서 제안하는 것이고, 500여만원을 주어야 하는데 200만원 주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하였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이후에도 계속 좀더 낮추자고 요구하였고 상담소로서는 마치 물건값 흥정하듯이 태연히 협상을 요구하는 회사의 태도에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다. 정 그렇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상담소에서 강경한 태도를 취하자 200만원은 300만원으로, 300만원은 35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마침내 상담소에서는 회사와의 협상을 포기하기로 하고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보낼 진정서를 작성해놓았다. 그리고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자 그제서야 회사에서는 400만원을 다 지급할 뜻을 밝혔고, 모하메드는 4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외국인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은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 신장 활동 및 그들의 실태를 조사, 연구하는 단체입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직업병 등 한국에서 노동하고 있는 노동자로서의 인권과 더불어 출국과 비자 등의 문제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시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휴일: 토요일 및 공휴일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일요일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활동가를 기다립니다.

인권모임에서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해 헌신해주실 자원활동가를 기다립니다. 상담/자료정리/외국인노동자 도우미/번역/소식지 발간 등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위한 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외국어에 능통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후원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인권모임은 순수한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권모임의 취지에 동감하시는 분, 마음은 있으나 여건상 인권모임의 활동에 동참하시기 어려우신 분들께 성의에서 우러난 후원금을 부탁드립니다.

후원금 계좌번호:

국민은행: 794 - 25 - 0004 - 042 (사) 노동인권회관

조흥은행: 377 - 04 - 162533 박 석운

한빛은행: 106 - 07 - 021973 박 석운

◆ 노동인권회관 이사진 ◆

이사장 홍근수

이 사 홍성우 김찬국 강금실 곽노현 권인숙 김복호 김문수 김석현
노병직 박덕제 박성민 박순희 신윤환 안영도 윤종현 이상열
이석태 이양원 이영순 이옥경 이종구 이현범 한영철 황민영
고영구 고한석 김금수 김영환 박연철 박인제 신동수 양길승
윤진호 이광택 이문령 이상수 이진순 임종률 최영희 천정배
이 광 정현탁

◆ 소 장 박 석운 ◆ 부설단체 소장 식 원정 /상담국장 한 분수